

제30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

일시

2019. 11.29 (금) 14:00-17:30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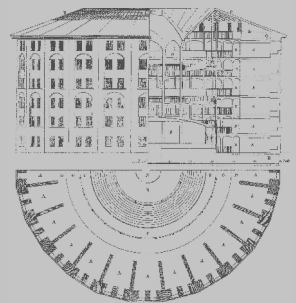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강당

주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아시아교정포럼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제30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

일시 2019. 11.29 (금) 14:00-17:30

장소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강당

주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아시아교정포럼 공동 주최

모시는 글

(사) 아시아교정포럼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9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은 교정복지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가족은 심신의 안정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건강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의 바탕이 됩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및 외국의 수용자 및 출소자의 가족 지원제도의 모범적인 사례와 그 이론적인 배경을 학계 및 교정 복지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족 교정복지 실현의 모범적인 담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수용자 및 출소자의 가족지원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1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이백철**

개회식

- **개회사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환영사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14:00~14:20 · **축사 현대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정기총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 규정 교육
- **기념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1

수용자 자녀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 14:20~15:10 · **발표 신연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이현미** 법무보호가족교육원 원장
- **사회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2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 15:10~16:00 · **발표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양현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서기관
- **토론 장선숙** 법무부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교감
- **사회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16:10

휴식

주제발표3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16:10~17:00 · **발표 김기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서기관
- **토론 김봉수**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정봉영**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소장
- **사회 박연규**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종합토론

- 17:00~17:30 · **종합토론** 사회 **박연규**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 2019년 11월 29일 **장소** -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강당



내용 - 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 회원이 연구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대상

제3조: 용어

제3장 공동연구

제5장 논문심사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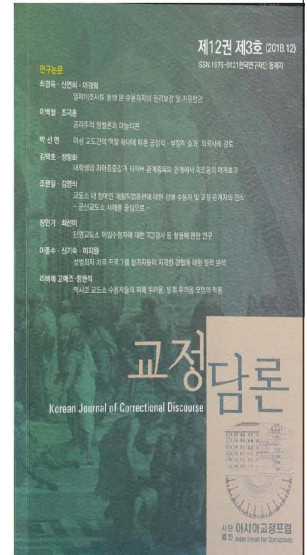
제4조: 정직성

제5조: 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제6조: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6장 윤리규정시행





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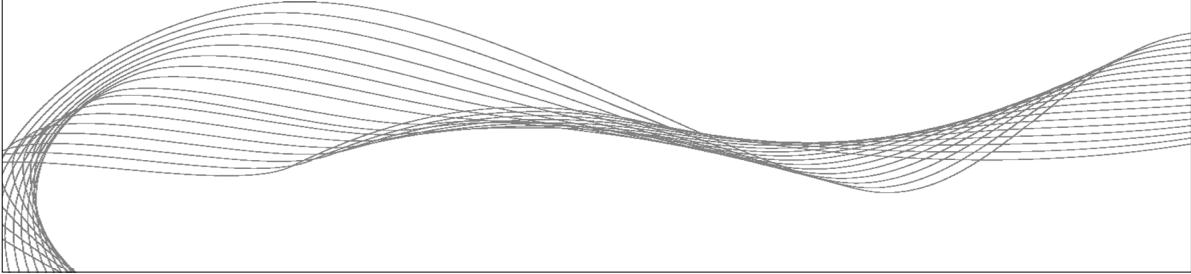
(사) 아시아교정포럼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9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은 교정복지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가족은 심신의 안정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건강한 시민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의 바탕이 됩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및 외국의 수용자 및 출소자의 가족 지원제도의 모범적인 사례와 그 이론적인 배경을 학계 및 교정 복지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족 교정복지 실현의 모범적인 담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수용자 및 출소자의 가족지원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1월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이 백 철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입니다.

오늘 제30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출소자 지원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의 공동주최를 허락해 주신 천주교 서울 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현대일 신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정포럼의 이백철 이사장님, 연성진 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관계자 및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환영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은 교정의 인문화를 기치로 2007년 창립된 이후, 매년 심도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의 철학수립과 현안해결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이라는 대주제 아래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를 아우르면서 범죄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족차원의 지원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수용자와 출소자가 가족갈등이나 가족해체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재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예방에 획기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최근 교정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형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업강화를 통해 출소전과 출소후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연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부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용자 및 출소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가족 지원사업이 논의되고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출소자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부디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주제발표 및 토론과 사회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강 호 성



축사

아시아교정포럼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옥’이라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들어가서 벌 받는 곳,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절대로 사회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용자들의 올바른 사회복귀와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는 우리 사회의 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은 이렇듯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교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벌써 30회 동안이나 학술적 검토와 토론을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한 나라와 민족의 문명은 경제력만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곤궁한 사람에게 얼마나 배려로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용자 가족은 가족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경제적 결핍과 여러 가지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출소자 가족 역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출소자를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복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풍요롭게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건강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참다운 교정 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11. 29.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 대 일**

Content

주제발표 1

-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13
- 발표 : 신연희(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 :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미(법무보호가족교육원 원장)
 - 사회 : 연성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

-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 미국, 영국, 캐나다 49
- 발표 : 박선영(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양현규(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서기관)
장선숙(법무부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교감)
 - 사회 : 연성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3

-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85
- 발표 : 김기환(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서기관)
 - 토론 : 김봉수(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봉영(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소장)
 - 사회 : 박연규(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부 록

-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 규정 120

주제발표 1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



제1주제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신 연 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방법
- III. 수용자자녀들의 상황
- IV. 관련제도의 현황
- V. 수용자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I. 들어가는 말

모든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제2조)에서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인종·종교·언어·빈부·장애여부를 떠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사랑은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로서 부모의 보호와 돌봄과 안정된 물리적 여건 등을 의미한다.

수용자자녀들은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UN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통보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UN아동권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리협약의 참여권, 면접권). 이와 같은 아이들이 국내에서 해마다 50,000여 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연희 외, 2017: 48).²⁾ 나아가 누적되면서 적지 않은 인구가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은 취약아동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용자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수용자자녀들은 법적, 정책적,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법적으로 특정 법률에 의해 별도로 지원대상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빈곤취약가정 아동의 유형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는 범죄인 자녀라는 낙인과 비난을 비롯하여 총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와 인권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이다. 법집행과 공권력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이지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용자자녀 문제에 관해 그동안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여 실태파악 및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수용자자녀문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주목을 한 것은 2007년의 일로서 법무부 인권국이 지원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한 “수형자 가족관계건강성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다(전영실 외, 2007).³⁾ 한편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 수행한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박선영·신연희, 2010)을 들 수 있다. 2011년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으로 7개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수용자위기 가정에 대한 융합행정을 위한 체결식은 관련 부처별로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⁴⁾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2014년 출소자와 출소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형자 가족복원 및 자녀지원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이동훈 외, 2014),⁵⁾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희망센터’에서 출소자 및 출소예정자의 가족과의 재결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수용자 전수조사를 통해 추산한 수용자의 19세 미만 자녀는 일일평균 22,000여명, 연간 54,0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였다(수용자 일일평균 인원 57,000명 기준, 연간 입·출소 인원 140,000명, 전체 수용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비율 25.4%, 미성년자녀수 평균 1.52명 기준). 이 조사에서 수용자자녀 연간발생인원은 과다추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정시설의 연간 입·출소인원을 140,000 명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교정시설 연간 입·출소 인원은 85,000여명(법무연수원, 2019: p. 379 & p. 410)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32,000여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85,000 \times 25.4\% \times 1.52 = 32,816$ 명).

3) 이 연구는 전국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수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형자 표본은 기혼수형자로 한정하여 총 556명이었고, 수형자 가족은 접견을 온 기결수형자 가족으로 총 231명이었다(전영실 외, 2007).

4) 당시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가부, 경찰청, 서울대학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수용자위기가족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시한 출소자 및 출소예정수형자대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추출한 200명의 출소자 표본(주거지원자 176명, 창업지원자 12명, 두 개 모두를 지원받고 있는 12명)과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추출한 254명의 출소예정 수형자이다(이동훈 외,

합 및 가족관계 회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개별교정기관과 민간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수용자자녀들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조사기관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였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 및 미결수용자자녀들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다(신연희, 2015).⁶⁾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조사는 수용자자녀들을 인권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 수용자자녀지원 전문기관, 법조계 등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수용자전수조사와 함께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유형별(생존, 발달, 보호, 참여)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침해상황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신연희 외, 2017: 98-118). 또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에 관한 결정사항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수용자자녀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에서의 관심을 2007년의 법무부 인권국의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한다면 관련연구, 정책 및 실천사업은 10여년의 기간이 경과한 셈이다. 그러나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과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지원제도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수용자자녀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에서 수용자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상황을 분석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

6) 성동구치소와 기독교세진회가 협력하여 성동구치소 미결수용자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고 1,005명 자료를 분석하였다(신연희, 2015).

II. 연구방법

1. 주요개념

본 연구는 수용자들의 상황과 지원제도의 현황을 아동의 권리를 기준을 살펴보고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함의점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개념인 “아동의 권리”는 아동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하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기본권리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1989년 채택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제조약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은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4개영역으로 나눠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으로 규정하고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정책위키, 2019 인터넷자료).⁷⁾

본 연구에서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 함께 수용자자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와의 면접권을 더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상황과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⁸⁾ 이하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부모와의 면접권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해당조항을 제시하였고(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해당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은 수용자자녀에게 적절하도록 정의하였다.

가.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아동권리협약 제 6조 등)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7) 포용국가아동정책에서 정책과제의 기본이 되는 아동의 권리로는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책위키, 2019 인터넷자료). 보호권: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인권과 참여권: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놀이권: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⑩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8) UN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에서 40조까지는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이다(국가법령정보, 2019 인터넷자료).

이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유니세프, 2019 인터넷자료). 수용자자녀들에게는 빈곤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거빈곤 가정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방치된 아동에 대한 자녀돌봄 지원, 긴급복지지원과 연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제27조 등)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도록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가 아동의 건강, 주거, 경제, 교육, 문화, 여가 등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자녀들에게 학교적응지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병원비 지원,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혜택, 자녀캠프 및 자조모임, 자녀상담,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해당될 것이다.

다.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제20조 등)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양육자가 양육능력이 없는 등 양육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위탁양육, 아동보호기관 양육, 입양 등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수용자자녀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체포현장, 검찰의 피의자 조사과정, 그리고 교정기관의 신입수용자조사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위탁 등과 같이 아동보호체제로 연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출소 후를 대비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부모가 할 수 있도록 수용자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수용자자녀의 보호권에 관한 사항이다.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것과 대안적인 형사제재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강력범죄자인 경우 자녀의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미디어의 책임도 이에 해당한다(신연희 외, 2017: 227).

라.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제12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수용자자녀들의 경우 특히 아동에게 해롭지 않는 한 아동이 원한다면 부모의 수용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알권리에 관한 것과 어떤 양육자와 함께 살 것인지에 관한 선택, 거주지 이전 등에 있어 아동의 의사반영, 접견여부에 관한 자녀의 의사존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찰단계에서는 부모체포 당시 아동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와 지원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아동에게 적합한 언어로 수용된 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신연희 외, 2017: 227).

마.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및 면접권 (Right not to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nd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부모의 구속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어 떨어져 사는 동안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교정기관에 자녀를 위한 아동친화접견실 마련, 자녀접견대기실 마련, 교통편제공을 통한 접견지원, 부모의 책임기 녹음을 자녀에게 전달하기, 전화 및 스마트접견 등 대체접견방법 제공, 충분한 면접시간, 자녀의 일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 접견, 자녀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부모수용, 아동의 충격완화를 위해 교정시설 외의 장소에서 자녀와 접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개념을 수용자자녀에게 적용하여 정의하고자 하며,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에 관한 주요영역별 개념

권리영역	권리 내용
생존권	경제적 생활, 주거, 영양, 보건, 돌봄, 긴급지원
발달권	건강, 학교적응, 병원치료, 문화생활, 자녀상담, 멘토링, 자녀캠프
보호권	보호아동 발굴, 보호체계연계, 낙인방지, 부모교육, 구금최소화 및 대안적 형사제재
참여권	부모에 관한 정보제공, 자신과 관련된 일에 알권리, 접견여부 의사반영, 거주지와 양육자선택에서 자녀 의사반영
면접권	부모와 정기적 접견, 접견활성화 방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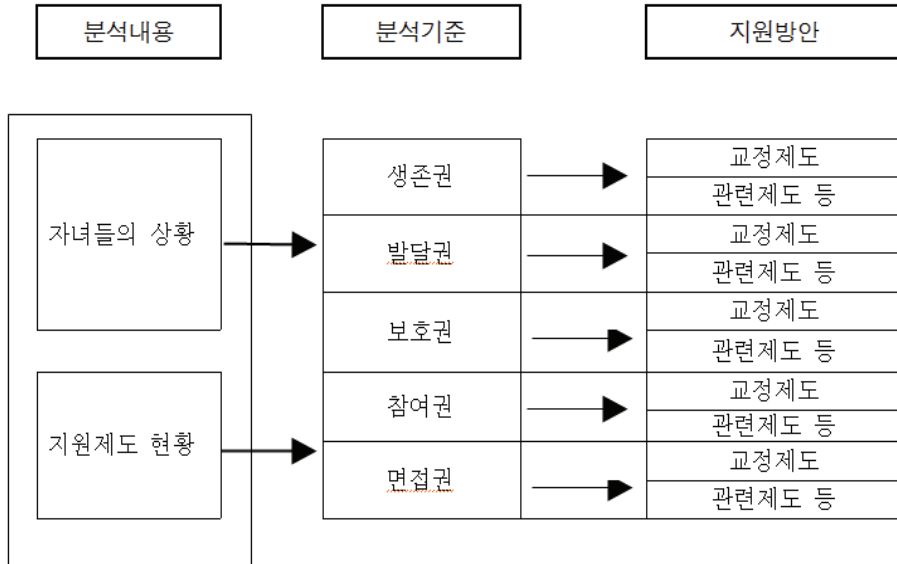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지원제도 현황을 아동의 5대 권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용자자녀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인구규모와 부모의 수용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지원제도는 교정제도와 유관부처(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등)의 수용자 자녀지원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분석한 2차 자료는 법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정통계연보(교정본부, 2019 & 2014)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수용자 조사자료(신연희 외, 2017), 그리고 정책 자료들이다. 교정통계연보는 2019년과 2014년에 교정본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에서 수용자로부터 수집한 자료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10,416명이다. 자료 분석은 주요내용을 요약하는 기술통계에 국한하였고 부모의 수용기간과 자녀들 상황과의 관련성은 카이스퀘어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분석틀

〈그림 1〉 연구 분석틀



Ⅲ. 수용자자녀들의 상황

1. 수용자자녀들의 인구규모

교정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일일평균 21,765명(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수 13,834명)이다(법무부, 201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수용자 전수조사를 통해 만18세까지의 수용자자녀는 일일평균 22,000여명, 연간 54,000여명으로 추산하였다(신연희 외, 2017: 48).⁹⁾ 그런데, 실제 교정시설 연간 입·출소 인원은 85,000여명(법무연수원, 2019: p. 379 & p. 410)이며, 이를 기준으로 재분석하면 수용자자녀수는 연간 32,000여명이다.¹⁰⁾ 여기서 수형자의 45%가 재복역자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해마다 18,048명의 수용자자녀들이 새로이 발생한다

9) 수용자 일일평균 인원 57,000명, 연간 입·출소 인원 140,000명, 전체 수용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비율 25.4%, 미성년자녀수 평균 1.52명 기준으로 수용자자녀의 일일평균 인원 및 연간인원을 산출하였다(신연희 외, 2017: 48-49).

10) $85,000\text{명} \times 25.4\% \times 1.52\text{명} = 32,816\text{명}$

고 볼 수 있다.¹¹⁾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의 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일일평균 22,000여명의 수용자자녀들이 상존해 있고 연간으로는 32,000여명 수용자자녀들이 존재하는데 이중 18,000여 명이 해마다 새롭게 수용자자녀 인구에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용자자녀 연간인원을 32,000명으로 볼 때 2019년을 기준으로 18세 이하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37%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19 인터넷자료).¹²⁾ 미국의 경우 수용자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연령 청소년인구의 2.3%인 것과 비교할 때(Glaze & Maruschak, 2010),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매년 18,000여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새롭게 수용자자녀 인구로 편입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목해야 할 인구집단임에 분명하다.¹⁴⁾

2. 수용기간에 따른 자녀들의 변화

가. 조사대상자와 변수의 조작화

이하에서는 부모의 수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분석하였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한 2차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당시(2017년 6월)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40,936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중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남녀수용자 10,416명으로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수용기간에 따라 자녀들의 성장환경이 아동의 권리영역별로 변화가 있는지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측정하는 변수는 가정경제수준(생존권), 체포장면 목격(발달권), 자녀양육자(보호권), 수용사실인지여부(참여권), 부모와 접견여부(면접권)이다.¹⁵⁾

11) $85,000\text{명} \times 55.0\% \times 25.4\% \times 1.52\text{명} = 18,049\text{명}$

12)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0세부터 18세까지 오름차순은 307,670+352,795+397,346+438,275+442,186+437,776+480,234+476,079+482,426+448,157+462,203+497,677+457,447+437,791+460,389+491,474+488,887+537,297+622,057=8,718,166 이다. 이는 총인구 51,833,175명의 16.8%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19 인터넷자료). 18세 이하 수용자자녀 32,000명은 동일연령의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367%에 해당한다.

13) 미국은 전국수준의 통계를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의해 발표하고 있는데, 주 및 연방 교정시설의 18세미만 수용자자녀는 1991년에 약 95만명, 1999년에 약 150만명, 2007년에는 약 17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수용자의 미성년자녀는 미국의 동일연령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Glaze & Maruschak, 2010).

14) 2017년을 시작점으로 가정하면 수용자자녀는 2017년에 32000명, 2018년 50,000명, 2019년 68,000명, 2020년에는 86,000명, 2021년에는 104,00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큰 규모로 누적되어 갈 것이다.

나. 조사대상자의 특성

수용된 부모 및 자녀들의 기초정보는 <표 2>와 같다. 먼저 수용된 부모의 특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90.2%와 9.6%로 수용자 인구구성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부모가 수용된 기간은 한달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47.2%이고 1년에서 5년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달 미만이 5.9%로 뒤를 잇고 있다. 부모가 수용된 기간으로 1년 미만이 합하여 절반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단기간인 1년 미만의 한시적인 보호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2> 수용자 및 자녀들의 기본정보

단위: 빈도(백분율)

항목	빈도(백분율)	항목	빈도(백분율)
성별		체포장면 목격여부(발달권)	
아버지(남자수용자)	9,299(90.2)	목격했음	671(6.7)
어머니(여자수용자)	990(9.6)	목격하지 않음	9,347(93.3)
합 계	10,289(100.0)	합 계	10,018(100.0)
수용된 기간		가정경제 수준(생존권)	
한달 미만	604(5.9)	부유한편	353(3.4)
한달-1년 미만	4,836(47.2)	보통임	4,919(47.8)
1년 -5년 미만	4,169(40.7)	가난한 편	2,997(29.1)
5년-10년 미만	491(4.8)	매우 가난함	2,030(19.7)
10년 이상	152(1.5)	합 계	10,299(100.0)
합 계	10,252(100.0)		
친부모 양육여부(보호권)		수용사실인지여부(참여권)	
한쪽부모가 자녀양육	7,518(74.1)	알고 있음	3,848(40.6)
부모 외의 자가 자녀양육	2,626(25.9)	모르고 있음	5,623(59.4)
합 계	10,144(100.0)	합 계	9,471(100.0)
부모와 접견여부(면접권)			
접견한적 있음	3361(33.6)		
접견한적 없음	6645(66.4)		
합 계	10,006(100.0)		

※ 항목에 따라 응답자 수가 다름

15) 체포장면목격, 수용사실인지여부와 접견여부는 첫째자녀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서 체포장면목격은 트라우마와 같은 아동의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발달권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자녀들의 특성을 볼 때 먼저 가정경제의 형편(생존권)은 매우 취약하다. 빈곤층(가난하다&매우가난하다)이 절반에 이른다. 자녀가 체포장면을 목격하는 것(발달권)은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커서 심리적 발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데(Murray and Farrington, 2008), 6.7%가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자가 누구인지(보호권)을 볼 때 남은 한쪽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74.1%로서 나머지 25%가량은 친생부모로부터의 보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지(참여권)는 자녀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60%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부모와의 접견(면접권)은 자녀의 33.6%만이 경험하였고 대다수의 자녀들이 부모와의 면접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아동의 의사와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다 부모의 수용기간에 따른 자녀생활의 변화

〈표 3〉은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유형별(생존, 발달, 보호, 참여, 면접권)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체포장면 목격(발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들은 모두 부모의 수용기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의 경제상황(생존권)은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하게 안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X^2=72.01$, $p<.001$). 수용초기에는 갑작스럽게 생계부양자를 잃게 되고 재판비용 및 기타 재산상의 타격으로 인하여 불안정하던 것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지원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정지원 등), 대체 생계부양자의 형성 등과 같이 위기대처방안이 모색되어 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수용초기의 수용자 가정의 자녀들이 생존권면에서 가장 위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지(보호권)는 수용기간이 경과함께 따라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X^2=53.18$, $p<.001$).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자녀들은 양부모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의 수용사실을 자녀가 알고 있는지(참여권)는 부모의 수용기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X^2=229.85$, $p<.001$). 부모의 수용초기에는 수용사실을 모르던 것이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모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양극단을 비교하면 부모의 수용사실에 대해 1달 미만의 수용자자녀들은 24.2%만이 알고 있지만, 수용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60%에 가까운 수용자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게

된다. 심리적 충격완화 등 자녀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의 진정한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용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된 부모와의 접견(면접권) 역시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접견 경험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접견과 수용기간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X^2=466.99$, $p<.001$). 교정기관에서 자녀접견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모의 체포장면목격(발달권)은 부모의 수용기간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수용기간과 무관하게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자녀들은 발달권의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 부모의 수용기간과 권리유형별 자녀들의 변화

변인	한달 미만	한 달~ 1년미만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이상	전체	χ^2
경제상황(생존권)							
부유한편	7(1.2)	154(3.2)	166(4.0)	12(2.5)	7(4.6)	346(3.4)	72.01***
보통임	268(44.4)	2193(45.6)	2120(51.1)	219(44.8)	71(47.0)	4871(47.7)	
가난한편	194(32.2)	1418(29.5)	1169(28.2)	156(31.9)	38(25.2)	2975(29.2)	
매우 가난함	134(22.2)	1049(21.8)	690(16.6)	102(20.9)	35(23.2)	2010(19.7)	
합 계	603(100.0)	4814(100.0)	4145(100.0)	489(100.0)	151(100.0)	10202(100.0)	
체포장면목격(발달권)							
목격했음	29(4.9)	294(6.4)	279(6.9)	37(7.8)	12(8.3)	651(6.6)	5.391
목격하지 않음	557(95.1)	4330(93.6)	3760(93.1)	440(92.2)	132(91.7)	9219(93.4)	
합 계	586(100.0)	4624(100.0)	4039(100.0)	477(100.0)	144(100.0)	9870(100.0)	
부모양육여부(보호권)							
부모가 양육	456(77.0)	3542(75.0)	3032(75.0)	302(63.0)	90(59.6)	7422(74.3)	53.18***
부모가 양육자 아님	136(23.0)	1182(25.0)	1013(25.0)	177(37.0)	61(40.4)	2569(25.7)	
합 계	592(100.0)	4724(100.0)	4045(100.0)	479(100.0)	151(100.0)	9991(100.0)	
수용인지(참여권)							
알고 있음	131(24.2)	1542(35.2)	1795(46.8)	238(54.6)	77(58.8)	3783(40.6)	229.85***
모르고 있음	411(75.8)	2844(64.8)	2037(53.2)	198(45.4)	54(41.2)	5544(59.4)	
합 계	542(100.0)	4386(100.0)	3832(100.0)	436(100.0)	131(100.0)	9327(100.0)	
접견여부(면접권)							
한적있음	71(12.2)	1200(25.9)	1768(43.9)	215(45.3)	63(43.2)	3317(33.6)	466.99***
한적 없음	512(87.8)	3427(74.1)	2262(56.1)	260(54.7)	83(56.8)	6544(66.4)	
합 계	583(100.0)	4627(100.0)	4030(100.0)	475(100.0)	146(100.0)	9861(100.0)	

3. 아동권리와 수용자자녀들의 상황

이상의 분석결과가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상황에 함의하는 바는 <표 4>와 같다.

<표 4>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상황

권리영역	권리 내용(일반적 내용)	권리 상황 (분석 결과)
생존권	경제적 생활, 주거, 영양, 보건, 돌봄, 긴급지원	- 경제적 빈곤 - 부모 수용초기의 자녀들이 가장 위기적
발달권	건강, 학교적응, 병원치료, 문화생활, 자녀상담, 멘토링, 자녀캠프	- 체포장면 목격(7%)으로 심리적 손상 - 체포를 목격한 모든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심리치료 및 자녀상담 필요 - 부모의 수용사실(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평균 40%)을 알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필요
보호권	보호아동발굴, 보호체계연계, 낙인방지, 부모교육, 구금최소화 및 대안적 형사제재	- 친생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함(평균 25%) - 부모의 수용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보호권에서 벗어나게 됨. - 보호아동 발견 및 아동보호체계 연계 필요함.
참여권	부모에 관한 정보제공, 자신과 관련된 일에 알권리, 접견여부 의사반영, 거주지와 양육자선택에서 자녀 의사반영	-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름(평균 60%) - 자녀의 진정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매뉴얼 필요
면접권	부모와 정기적 접견, 접견활성화 방안들	- 부모와 접견한 적이 없음(66%) -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접견경험이 상승하고 있어서 접견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IV. 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교정처우제도 현황

이하에서는 수용자자녀 권리보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에 관해 교정제도 및 유관 정부기관의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 수용자자녀지원 관련 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접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형집행법 제 41조③항).

가족접견실 및 아동친화접견실을 운영하고 아동복지법에 의해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형집행법 제 53조의2)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¹⁶⁾ 보호아동 발굴을 위해 보라미 방송을 통해 자녀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하고 있으며 수용생활안내, 신입수용자교육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해 보호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용자에 의해 보호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가 소재하는 해당지자체장에게 보호아동을 연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하여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였지만 최근 형집행법의 개정(제53조의2)에 의해 교정기관장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조항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¹⁷⁾

접견복장과 관련하여 가족접견에서 미성년자녀가 참석하는 경우, 수용자가 원한다면 귀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③).

한편 일과시간외의 주말접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접견과 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 모두 2019년 현재에는 미리 예약 신청을 하면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자녀들이 학과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교정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견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우선, 자녀접견 시 접견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의 접견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다면 심사절차과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녀의 접견장소는 접견민원실의 아동친화접견실로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 이곳에서 접견을 실시한다면, 현재처럼 장소변경접견 신청을 하거나 시설의 내부에 위치하는 가족접견실까지 자녀들의 방문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불편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1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는 수용자처우에서 “특별한 보호” 인구에 여성, 임산부여성, 유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소년수용자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형집행법 제50조-54조).

17) 현재 관련조항의 실행을 위해 법무부 내부지침을 제정 중이며, 2020년 상반기에 교정일선기관에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용자에 의해 보호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령으로 마련하는 관련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고, 이를 운영하는 교정공무원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호아동 발굴을 위해 보라미 방송과 수용생활안내, 신입수용자교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적극적으로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현황파악에 관한 근거조항이 형집행법 또는 법무부령을 통해 해당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4월 전체 수용자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전산화하였고 신입수용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전산화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령에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조사결과를 교정통계연보에 포함할 것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나.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5〉는 교화프로그램들의 운영 현황인데 수용자자녀들의 면접권과 주로 관련된다. 일반접견, 화상접견,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실 접견, 전화,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집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아쉽게도 스마트접견이 포함되지 못하였다.¹⁸⁾

주된 특성을 보면 첫째, 일반접견을 제외하고는 이용율이 매우 낮다. 일반접견은 40% 내외의 수준이고 가족만남의 날은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화는 10% 수준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정체상태이다. 둘째, 희망적인 것은 여전히 극히 소수의 수용자에게 기회가 부여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접견실 접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접견실 접견은 증가폭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면접권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만남의 날, 가족사랑캠프가 여러 가족이 함께 진행하는 대표적인 집단프로그램인데 두 프로그램 모두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넷째, 일반접견을 대체할 수 있는 개별프로그램은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화상접견, 가족접견실 접견, 전화, 가족만남의 집은 참여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집단접견 보다는 가족단위의 개별접견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신청절차가 복잡한 장소변경 접견은 감소하고 있다. 장소변경접견은 접촉

18) 일반접견,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 등은 개방처우 등급에 따른 자격제한이 없다.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에게 해당하는데, 가족만남의 날은 원칙적으로 S2이상에게 허용되며 접견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전화는 S1, S2에 해당하나 처우상 필요에 의해 모든 수용자에게 허용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접견은 담당부서가 사회복귀과가 아닌 보안과 관련 사항이라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이 어려웠다.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접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는데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성이 접근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합의하는 바는 첫째, 교화프로그램의 확대실시를 통해 자녀들의 면접권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분리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제9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수용된 동안 자녀들이 원할 때 부모와의 면접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장벽은 적극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용자자녀관련 교정처우제도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율은 경미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수용자와 자녀를 위한 면접제도의 하드웨어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운영실효성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접견과 달리 교도소 방문없이 접촉이 가능한 접견대체 프로그램을 증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화,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교도소 외 접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개별접견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가족접견실 접견, 장소변경접견, 전화,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가족만남의 집의 운영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소변경접견의 경우 수용자자녀들의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접견장소의 위치를 접견민원실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 접근가능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접견민원실에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아동친화형 접견실을 마련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접견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친화형 접견실이 목적에 맞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친화형 접견실의 위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¹⁹⁾

다섯째, 자녀접견의 활성화를 위한 심리적·물리적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도소 외의 장소에서의 접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에 6개, 2018년에 8개, 2019년 9개 기관에 완공 예정이며, 2021년까지 11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현재 가족접견실을 운영 중인 17개 기관의 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형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정책브리핑, 2019 인터넷자료).

〈표 5〉 연도별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 연도	2005	2007	2010	2015	2018
일반접견 (1인당 연간 접견횟수)	1,982,573 (37.8)	1,798,021 (38.8)	2,030,568 (42.8)	2,576,186 (47.9)	2,504,718 (37.5)
화상접견 (1인당 연간 화상접견횟수)	90,614 (1.7)	124,012 (2.7)	159,144 (3.4)	246,645 (4.6)	294,150 (5.4)
장소변경 접견 (1인당 연간 장소변경접견횟수)	21,550 (0.4)	18,603 (0.4)	14,716 (0.3)	13,397 (0.2)	7,234 (0.1)
가족접견실 접견		2012년 첫 실시	353a (0.7)	432 (0.8)	4144 (7.5)
전화 (1인당 연간 전화횟수)	302,624 (5.8)	349,798 (7.6)	490,903 (10.3)	569,562 (10.6)	594,835 (10.3)
가족사랑캠프 (1인당 연간 가족사랑캠프횟수)	2006년시행 (수용자 8명, 가족 10명)	13명 (가족 36명)	584명 (2014년)	791명	541명
가족만남의 날 (수형자 참여율)	10,082 (30.6)	11,601 (39.6)	11,078 (36.2)	12,755 (39.1)	8,891 (25.9)
가족만남의 집 (수형자 참여율)	373 (1.1)	453 (1.4)	1,223 (3.8)	1,361 (4.2)	1,913 (5.6)
1일평균 수용인원	52,403	46,313	47,471	53,892	54,744
1일평균 수형자인원	32,933	29,289	30,607	32,649	34,377

※ 자료출처: 「2019 교정통계연보」& 「2014 교정통계연보」& 사회복지과 내부자료(가족접견실 접견과 가족사랑사랑캠프 현황 자료)

※ 화상접견,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실 접견, 전화는 수용자 1인이 연간 수차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의 단위는 수용자 1인당 연간 사용건수 평균을 제시함.

※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 1인이 대개 연간 1회에 한해 참여하게 되므로 ()의 단위는 수형자의 참여율을 제시함.²⁰⁾

※ 1일평균 수용인원 및 수형자 인원은 교정통계연보 전체 수용자현황 자료임(「2019 교정통계연보」, p. 58 &, 「2014 교정통계연보」 p. 58)

a: 가족접견실 접견 2014년 통계임.

20) 수형자 1일 평균인원은 교정통계연보의 전체수용자통계자료(각 연도 통계연보 p. 58)와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 해당 통계자료 에서 제시한 인원이 서로 상이함(2015년, 2018년). 본 분석에서는 전체수용자 현황자료를 사용하였다.

2.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실천가, 학계,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들은 법적, 정책적,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9년 들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포용국가아동정책에서 수용자자녀들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아동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경찰청의 피의자체포시의 자녀배려 및 아동보호체계연계에 관한 경찰의 체포수칙. 그리고 검찰조사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인지를 조사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발표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수용자자녀문제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법률적, 정책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수용자자녀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법률적 현황

수용자자녀들은 특정 법률에 의해 지원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빈곤취약가정으로 지원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형의집행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장장의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교정기관의 장이 수용자를 통해 보호가 의뢰된 아동에 대해 지자체장에서 보호아동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한부모가정지원법에서는 부모의 수용으로 자녀부양이 어려워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조손가정특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은 자녀에 특정하기 보다는 생계부양자의 수용으로 빈곤에 처한 가구단위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수용자자녀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근거가 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법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수용자자녀 및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수용자자녀를 보호대상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발표된 ‘포용국가아동정책’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수용자자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자자녀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아동정책”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포용국가아동정책”에서 수용자자녀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였다.²¹⁾ UN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중 보호권

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강화”한다는 정책의 세부추진과제로 보호대상아동의 여러 유형 중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호아동”의 항목에서 한부모가정 아동과 함께 “부모가 교정시설에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정책에 의하면 수용자자녀에 대해 ①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②접촉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 가능 ③미성년일 때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항목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2018년 10월 기준 1,209명)에 대해 수용자가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교정기관장에 의해 의뢰된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책위키, 2019).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법무부 외의 중앙부처에서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수용자자녀를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였다는데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독특한 역할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과제에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와 가정위탁 지원 강화”를 한다는 내용에 수용자자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²²⁾ 원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대리가정으로 가정위탁과 입양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용자자녀들은 원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기간은 부모가 수용되어 있는 한시적 기간이다. 따라서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가정위탁제도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³⁾

둘째,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위기아동 전수조사에서 방치된 수용자자녀들의 발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자녀들 중 양육자가 부적절하거나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어린자녀들은 정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들 아동에 대한 전산정보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도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21)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아동권리 네 개 영역별로 우리정부가 포용국가아동정책으로 발표한 1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2019년 5월 23일 발표). “보호권”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인권과 참여권”: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놀이권”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⑩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정책위키, 2019).

22) 원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① 아동 이익 최우선 입양체계 :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통합 지원, ② 입양숙려 기간 연장,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지원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정책위키, 2019 인터뷰자료).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아동 이익 최우선 입양체계에 관해서는 첫째,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통합 지원, 둘째, 입양숙려 기간 연장,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지원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위탁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영아·학대아동 등 전문가가정위탁 법제화와 가정위탁 활성화를 담고 있다.

23) 입양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수용기간 동안의 대리가정이 필요한 수용자자녀들의 경우는 가정위탁제도가 적절하다.

위기에 처해 있는 보호아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⁴⁾

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책권고”

아동인권의 측면에서도 수용자자녀에 대한 접근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도 수용자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최경옥 외, 2018)²⁵⁾는 사실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수용자자녀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용자자녀 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인권보호가 필요한 인구로 수용자자녀를 주목하고 수용자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7), 그 후속조치로 관련부처에 해당하는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결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라. 경찰의 체포 등 직무규칙

수용자자녀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권고는 관련부처의 정책변화에 계기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청의 경찰의 체포 등 직무규칙을 들 수 있다(경찰청, 2019). “피의자 체포시 자녀배려 등 유의사항”에 관한 직무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없는 상황에서 체포하며, 심리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가급적 체포 장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자녀의 연령을 감안하여 상황을 설명해 준다. 둘째, 피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자녀 또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보호자의 유무를 확인한다. 피의자 체포 후 자녀나 노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피의자 체포로 인해 피의자가 보호 중인 노부모·자녀 등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조치내용을 피의자에게도 안내하며,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아동

24)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확인,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한다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2019년10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아동복지법 제10조2)을 운영한다.

25)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윤덕경 외, 2015)에서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을 장애인, 비정규직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 등 14개 분야로 규정하였다(최경림·신연희, 2018).

보호 또는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에 연락”, “지자체와 연계된 「아동일시보호소」, 「양육시설」,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이·통장 또는 주변 이웃에게 임시보호 협조 요청”, “수사기록에 피보호 가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편철하여 구속 등 신병처리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경찰교육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는데, 전국 지방청장은, 피의자 체포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에 관해 전직원 대상 교육 철저(지역경찰 등 쏠 기능에 전파), 각 경찰교육기관장은, 피의자 체포·연행 및 인권교육 과정에서 자녀 배려 등에 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마련한 “피의자 체포시 자녀배려 등 유의사항”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체포 및 심문과정에서 경찰의 직무규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규칙의 강행성 확보, 경찰의 인식력제고와 관련 실무지식 제공을 위한 경찰교육 강화, 피보호가족 조치결과에 대한 기록 및 성과평가, 관련 직무규칙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규정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검찰의 인권개혁안

대검찰청 인권부에서는 2019년10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구속, 검거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에 관한 인권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가족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다른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속 피의자 등이 주소득자인 경우 생계부양자를 잃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9 인터넷 자료).

대검찰청 인권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법의 집행기관에서 수용자 가족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법의 집행으로 인한 가족의 피해에 대해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이 과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용자가정의 자녀들의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수용자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1. 생존권

수용자자녀들에게 생존권은 경제적 생활, 주거, 영양, 보건, 돌봄, 긴급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교정기관은 신입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빈곤가정 자녀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지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체포 시 경찰 직무규칙 강화로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피의자 심문과정을 통해 긴급생계지원대상자 발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방치되어 있는 아동의 조기 발견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정적인 사안이므로 부모와 헤어지는 초기단계에서 접하게 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교육 강화, 피보호가족 조치사항에 대한 산출물 기록 및 평가, 관련 직무규칙 위반사례에 한 조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발달권

발달권은 건강, 학교적응, 병원치료, 문화생활, 자녀상담, 멘토링, 자녀캠프가 수용자자녀들과 관련된다. 교정기관은 부모의 체포를 목격한 자녀를 발굴하여 심리상담을 의뢰하고, 접견민원실에 가족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²⁶⁾, 멘토링 및 자매결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과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보건복지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그리고 멘토링과 자녀캠프 운영(민간 기관)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용자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보호권

보호권은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굴, 보호체계연계, 낙인방지, 부모교육, 구금최소화 및 대안적 형사제재와 관련된다. 먼저 교정기관은 수용자자녀의 보호권

26) 교도소 내의 가족상담실은 가족문제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접견 온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하여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운영은 민간위탁운영이 바람직하며, 위치는 접견민원실 옆에 설치하고, 전문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접견 온 가족의 접견대기시간(30분-1시간 30분)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양육자상담, 보호아동 발굴, 자녀상담, 자녀돌봄, 양육자 교육,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장을 위해 수용자자녀 현황 파악 정확성 제고 및 법령에 근거조항 마련, 수용자자녀 현황자료를 교정본부 공식통계(교정통계연보 등) 항목에 포함시키는 일, 보호아동의 신속하고 누락없는 발굴(신입자 조사, 보라미방송, 신입수용자교육, 수용생활 안내), 의뢰된 보호아동을 아동보호체계로 연계, 수용자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관계 개선과 재결합 준비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역할은 경찰과 검찰의 보호대상 아동 발굴, 구속최소화(검찰청)²⁷⁾, 실행선고 최소화(법원), 보호 의뢰된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보건복지부), 수용자자녀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낙인의 인식변화(언론매체)를 들 수 있다.

4. 참여권

수용자자녀에게 부모에 관한 정보제공, 자신과 관련된 일에 알권리, 접견여부에 자녀 의사반영, 거주지와 양육자선택에서 자녀의사반영을 들 수 있다. 먼저 교정기관은 수용사실을 알리는 것에 관한 수용된 부모교육 및 양육자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는 일과 직원교육을 통해 수용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녀들이 발달상태에 적절하게 알권리 및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양육자 및 거주지 결정에 있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녀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부모의 체포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면접권

면접권은 대부분 교정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모와 정기적 접견, 접견활성화 방안들을 의미한다. 접견활성화를 위한 접견정보 제공, 접견 절차 간소화, 접견기회의 동등한 적용 및 확대, 접견장소의 접근가능성 높이기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방문대체접견 확대(전화 및 스마트접견)²⁸⁾ 교도소 외 장소면접 등도 제반여건을 형성한다면 포함시킬 수

27) 자녀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늘린다면, 자녀와 헤어져 지내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실행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와 분리되는 기간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경찰에 의해 갑작스럽게 연행되어 이별에 대한 준비없이 자녀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8)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을 이용하여 화상접견하는 방식으로서, 가족은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는 가족은 수용자가 수용된 기관에 찾아가 사진촬영,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도소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의 경우(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거나, 교도소 방문자체를 꺼리는 경우) 등록이 쉽지 않다.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전해주는 책임기 프로그램 활성화, 아동친화접견실, 자녀접견대기실 마련, 자녀거주지 가까운 곳에 부모를 수용하는 것도 면접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한편 자녀의 방문접견을 위해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은 접견지원은 민간과 협력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²⁹⁾

끝으로 수용자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수용자자녀지원은 자녀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편의나 수용관리의 원칙보다 자녀의 욕구와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의자 및 수용관리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와 관련된 서비스는 수용자의 상황(경비등급, 죄명 등)과 무관하게 자녀들의 욕구가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특히 종교단체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제한적이고 소규모적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과 협력할 때 아동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협력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표 6>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영역별 권리보장 방안

권리 영역	권리 내용	권리보장 방안	
		교정 기관	관련 제도 및 기관
생존권	경제적 생활, 주거, 영양, 보건, 돌봄, 긴급지원	-신입수용자 빈곤가정 자녀 발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체포 직무규칙 강화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경찰청) -피의자 긴급생계지원대상자 발견(검찰청)
발달권	건강, 학교적응, 병원치료, 문화생활, 자녀상담, 멘토링, 자녀캠프	-체포장면을 목격한 자녀발굴 및 심리상담 의뢰 -가족상담실 설치 및 운영 -멘토링 및 자매결연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보건복지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교육부) -멘토링, 자매결연, 자녀캠프(민간 기관)
보호권	보호아동발굴, 보호체계연계, 낙인	-수용자자녀 현황파악 정확성 제고 및 법령에 근거조항 마련	-경찰, 검찰의 보호대상 아동 발굴 -구속최소화(검찰청)

29) 자녀접견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간의 동행서비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들 수 있는데 교통편제공, 동행면접, 교통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에 의한 접견지원은 주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Get on the Bus (California)”에서는 2015년 CA주의 9개 교도소에 15000명의 자녀와 양육자에게 부모접견을 위한 버스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하였다(NRCCFI, 2019:8).

	방지, 부모교육, 구금최소화 및 대안적 형사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자자녀 현황자료를 교정본부 공식통계 항목에 포함 -보호아동 발굴(신입자 조사, 보라미방송, 신입자교육, 수용생활안내) -의뢰된 보호아동 아동보호체계 연계 -수용자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관계개선과 재결합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선고 최소화(법원) -보호 의뢰된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가 정위탁제도 등 보호방안마련(보건복지부) -편견과 낙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언론매체)
참여권	부모에 관한 정보 제공, 자신과 관련된 일에 알권리, 접견여부 의사반영, 거주지와 양육자선택에서 자녀 의사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교육 매뉴얼 발간 -직원교육(수용자교육 및 수용자 자녀지원 필요성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및 거주지 결정권에 대한 자녀권리 보장 (보건복지부) -부모의 연행상황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경찰)
면접권	부모와 정기적 접견, 접견활성화 방안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견활성화를 위한 접견정보 제공, 접견 절차 간소화, 접견기회의 동등한 적용 및 확대, 접견장소 접근가능성 증대 -방문대체접견 확대(전화 및 스마트접견), 교도소 외 장소면접 -자녀에게 주는 책임기 프로그램 활성화 -아동친화접견실, 자녀접견대기실 마련 -자녀거주지 가까운 곳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편 제공 등 접견지원(민간)



수용자자녀 지원 인프라

- ◆ 특별법 마련
- ◆ 전담기관 마련
- ◆ 정기적 실태조사
- ◆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참고문헌〉

- 경찰청, 2019,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 경찰청 내부자료(2019.10.).
- 국가인권위원회, 2019.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2019.5.30.)
- 박선영·신연희, 2010,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 2019,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무부, 2019, 「2019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 법무부, 2018, “수용자 미성년자녀 보호체계 구축(안)”,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 신연희, 2015,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지원필요성과 지원방안” (「한일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아동복지실천회세움·유승희의원실.
- 신연희·강정은·박선영·여연심·이경림·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윤덕경 외, 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 국가인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동훈·신연희·최관·방기연, 2014,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 조사 및 증장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경옥·신연희·이경림, 2018,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수용자자녀 권리방안 및 지원방안”, 「교정담론」 제12권 제3호: 1-39.
- Glaze, L.E. & Maruschak, L.M., 2010,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Murray, J. & Farrington, D. P. (2008), "Parental Imprisonment: Long-lasting Effects on Boys' Internalizing Problems through the Life Cours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 273-90.
- NRCCFI, 2019, 「Directory of Programs Serving Children & Families of the Incarcerated」,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Children and Families of the Incarcerated.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188>
- 정책브리핑, 2019: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89>

정책위키, 2019,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849>

유니세프, 2019: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

조선일보, 20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1109.html

(조선일보, 2019.10.9.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9: <http://27.101.213.4/>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전 영 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용자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영역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실태분석을 통해 권리보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스스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논문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수용자 자녀의 면접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기간 중의 부모-자녀 접촉은 유대강화 및 출소 후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은 단순히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수용자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자녀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통한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자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부모의 수용 이전에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 수용단계, 출소후 재진입 단계에서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자녀의 유대는 소극적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통한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둘째,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녀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주된 양육자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양육자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져야 미성년자녀의 보호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 부모나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해 주고, 현실에서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때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보호가 보다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수용자 부모를 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령별 지원,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미성년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달단계별 전문가가 미성년자녀의 발달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포에서부터 일시적인 구금, 재판, 교정시설의 전 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기간 중의 보호아동 발굴도 중요하지만, 수용 이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 필요할 것입니다. 발표논문에서도 부모와 헤어지는 초기단계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인 부모가 장기 복역을 하는 경우에는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표논문에서 경찰의 직무규칙에 피의자 체포시 부양가족 유무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규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형사사법단계마다 이에 대한 확인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상태(양육자 존재, 경제상황, 트라우마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연계될 수 있는 가용한 자원 목록이 체계화되어서 필요한 보호나 권리보장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수용자(혹은 피의자, 피고인) 자녀에 대한 태도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발표논문에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

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용자 자녀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 지원대상 아동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하여 보호대상, 지원대상으로 보호·지원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용자 자녀의 특성, 예를 들면 보호자와의 강제적 격리나 보호자 구금으로 인한 충격이나 트라우마, 주변의 낙인이나 비난으로 인한 상처나 위축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현 미*

본 연구는 국내 수용자 자녀들의 권리상황과 관련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수용자 자녀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먼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리 영역별로 수용자 자녀들의 권리 현황을 잘 보여주었으며 부모의 수용기간 변수를 추가하여 아동의 권리 유형별 교차분석 등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했다. 물론 본 연구를 위해 새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재분석을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현황 분석 결과, 상당수 수용자 자녀들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절반 가량의 가정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연구대상자중 약 20%는 극빈층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보호권에 있어서는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자녀들이 양부모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자녀의 부모 수감 사실 인지 여부는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남겨진 가족들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은 면접권인데, 부모를 접견한 적이 없는 자녀들의 비율이 66.4%로 많은 수용자 가족들이 수용자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교정처우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수용자 자녀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교화프로그램은 주로 수용자 자녀들의 면접권과 관련되는데 일반접견, 화상접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교육원장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실 접견,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날 등이다. 유관기관들의 관련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포용국가아동정책,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권고, 검찰의 인권개혁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유관기관 정책 분야에서 2019년부터 교정본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일환이며, 가족원의 수감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수형자 가족을 지원하여 가정해체 및 범죄 대물림 현상을 예방하고, 수형자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미결수용자는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따른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형자 미성년 자녀들이 범죄의 제2차 피해자로 적극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에 법무부는 2018년 11월경 수형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러한 협업 계획에 따라 공단 자체적으로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진행 절차]

① 모집 및 통보	② 상담 및 지원	③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 교정기관 - 가족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교정기관→지부·지소(본부 경우) - 가족지원사업 희망자 명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부·지소 - 희망 수형자 상담, 가족상담 - 니즈(Needs) 파악·분석 - 보호서비스 결정 심사 - 보호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부·지소→공단 본부 - 사업진행결과 보고 공단 본부→교정 본부 - 수형자 가족 지원결과 통보
교정	공단	공단, 교정

교정기관에서는 공단의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에 대해 보라미 방송, 홍보 책자, 교정공무원의 직접 홍보 등의 방식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수형자는 교정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신청하고, 교정 공무원은 월 1회 공단으로 신청 수형

자 명단을 통보한다. 공단 직원은 수행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면담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면밀한 환경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행자 가족지원사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심리상담, 주거지원, 원호지원이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세부내용]

[학업지원]

- 수행자 미성년 자녀의 학습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학습교재, 학용품, 교복, 학비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 심리적 고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전문가와 개인상담, 심리검사 해석, 집단상담 등을 진행. 필요할 경우 전문의료시설 연계 가능

[주거지원]

- 부양 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여 가정회복 및 사회복귀 촉진(지원기간: 최대 10년, 2년씩 4회 연장)
- 월세방식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보증금 필요

[원호지원]

- 부양 의무자 수감으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행자 가족에게 실시하는 경제적 지원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지원 성과]

(‘19. 1. ~ 10.)

학업지원			심리상담 및 검사	원호지원	주거지원
직접지원 (물품)	간접지원 (학습지도 등)	장학금			
370명 / 54,645,657원	92명 / 284회기	33명 / 6,660,000원	108명 / 155회기	136명 / 31,280,400원	6명 입주 (17명 선정)

연구자는 끝으로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짓고 있다. 생존권 부문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아동의 조기발견이 결정적 사안이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 초기 단계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달권에 있어서는 수용자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보호권 향상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 발굴과 적절한 지역사회자원 연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교정본부 공식통계에 수용자 자녀 현황자료를 공식적으로 추가해서 누락 없는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권리보장의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행정의 편의 보다는 수용자 자녀의 욕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모두에 본 토론자도 공감한다.

본 연구는 수용자 자녀들의 권리 현황 실태를 각 권리별로 구분하여 잘 보여주었으며 국내 교정처우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관기관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책적 제언까지 잘 담겨 있어 향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시 참고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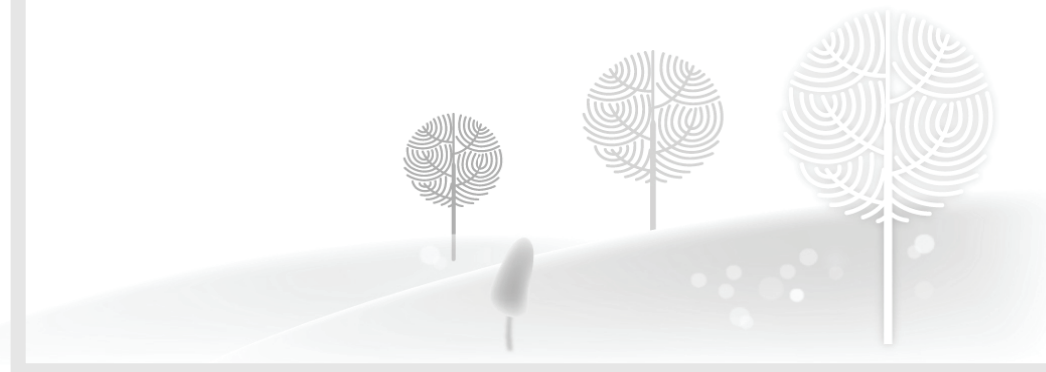
토론을 마치면서 연구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Q1) 수용자 자녀들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7년 당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가부, 경찰청, 서울대학교 등 7개 기관이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 그만큼 부처간 협업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자 또한 수용자 자녀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각 부처와 민간 간 실제적인 협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Q2) 일부 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중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법조항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의 법제정이나 별도의 부처, 컨트롤타워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주제발표 2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
미국, 영국, 캐나다



제2주제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 미국, 영국, 캐나다

박 선 영*

I. 서 론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임신부 여성 수용자가 출산하고 아기와 함께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것 지원, 둘째는 남녀 수용자의 사회 내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간 각 사회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 국가별로, 국가 차원이라기 보다는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관심과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관련 국가기관(예를 들면 교정국)은 법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왔다(박선영 & 신연희, 2011).

각 국가가 수용자 자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유엔의 수형자 관련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의 수립으로 인함이다(박선영 & 신연희, 2011).

1955년에 제정되고 2015년에 수정된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의 Rule 23은 임신부 수용자와 탄생한 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¹⁾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동 규칙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여성 교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1) <https://www.penalreform.org/resource/standard-minimum-rules-treatment-prisoners-smr/>

도소에서는 모든 필요한 출생 전과 출생 후 케어/처우를 실행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며, 아기가 교도소 밖의 병원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기가 교도소 안에서 탄생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출생 증명서에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아기가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 머물 경우 자격을 갖춘 직원이 아기 돌봄에 참여함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된 “UN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역시 수용자 자녀와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²⁾. 일명 방콕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본 규칙은 아동이 구금된 엄마와 함께 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동에게 최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아동은 최대한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아동이 양육된다면 외부와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교도소 직원은 아동 건강과 아동 발달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필요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가능한 비구금 처우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89년 수립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역시 수용자 자녀가 지원받고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³⁾ 동 협약의 세가지 기본 원칙 중에서 (2)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수용자 자녀가 처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 9항 “아동의 최고의 이익이 될 때 부모로부터 분리될 권리, 그러나 부모와 관계를 지속하고 규칙적으로 접촉할 권리”는 수용자 자녀에게 가장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협약이 수립될 1989년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2011년 9월에는 각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개최한 일반 토론회에서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가 논의의 주제로 제시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수용자 자녀도 다른 아동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고 법집행 과정 및 교정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가 반영이 되어 지난 2017년에 제출토록 한 5/6차 국가별 이행보고서에

2) https://www.unodc.org/documents/justice-and-prison-reform/Bangkok_Rules_ENG_22032015.pdf

3)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11.aspx>

서는 각 국가가 ① 교정시설에서 출산한 임신부 수용자가 아기와 함께 거주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②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 기술토록 요구하였다. 2017년도 이행 보고서 작성 당시 우리나라는 1번 사항에 대해서는 교정본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2번의 경우에는 2011년 교정본부가 다기관을 협력할 것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외에는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인 공식적 대응이 시작된 것은 최근인 2019년 4월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수용자 자녀지원과 관련된 교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이 더 발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⁴⁾. 그러나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법과 제도를 갖추게 된 세 국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 지원의 발전을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 수용자가 출산하게 된 경우에 엄마 수용자와 아기가 교정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프로그램과 사회 내에 있는 미성년자 수용자 자녀지원과 관련된 교정제도를 살펴보았다. 수용자 자녀지원의 발전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해당되는 교정국의 처우,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제도와 처우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지원 교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국, 영국, 캐나다의 수용자 자녀 현황

1. 미국

현재 미국에 몇 명의 수용자 자녀가 있는 지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으며 다만 추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Halter, 2018).

2017년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교정국 차원의

4)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4월 개정된 법에 의거해 교정시설에 입소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지원을 공표한 펜실베이니아 교정국은 홈페이지 상에 현재 1.7백만 명 아동의 부모가 구금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⁵⁾ 이는 미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가 2007년에 1,706,600 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가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한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2008). 반면에 미국 내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가장 큰 민간 단체인 Prison Fellowship은 현재 2.7 백만 명 아동의 부모가 구금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⁶⁾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여성 수용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미성년자 자녀의 규모 또한 커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미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에 연방과 주립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숫자는 1,489,400명이며 전체 수형자의 7% 수준이다. 전년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1980년과 2017년 사이에 여성 수용자는 750% 이상이 증가하였다.⁷⁾ 따라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여성 수용자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남겨진 미성년자 자녀도 증가했을 것이며, 엄마 여성 수용자의 대다수가 싱글맘이었던 점을 우려하고 있다(Halter, 2018).

현재 미국 교정국은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기와 엄마가 함께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가 꼭 교정시설에서 출산 한 아이가 아닌 사회 내에 있는 영유아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미국은 입소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수용자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연방 교정국(5개 시설)과 10개의 주 교정국에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거주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⁸⁾. 영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엄마와 아기 유닛(Mother and Baby Unit, MBU)”, 캐나다는 “Mother-Child Program(MCP)”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정시설 외에 델라웨어 주는 보호관찰을 받은 약물경험이 있는 임신부 및 어린 엄마가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해서는 세 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법(주 법)을 제정하여 지원을 공식화 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 교정국은 수용자 자녀지원을 홈페이지 상에 명시하며 강조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시설 내 자녀방문 시 다양한

5) <https://www.cor.pa.gov/family-and-friends/Page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aspx>

6) <https://www.prisonfellowship.org/resources/training-resources/family/ministry-basics/faqs-about-children-of-prisoners/>

7) <https://www.sentencingproject.org/publications/incarcerated-women-and-girls/>

8) <https://qz.com/1587102/what-its-like-to-give-birth-in-a-us-prison/>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자들과 단체들은 정부 관련기관과 교정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Halter, 2018).

2. 영국

영국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단체에 의해 그 규모가 추정되고 있다.

Prison Reform Trust(PRT)은 매년 영국 전역에서 17,000명의 아동의 엄마가 구금되어있다고 보고하였으며⁹⁾, 민간단체인 Children of Prisoners Europe(COPE)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빠의 구금으로 인해 109,759명의 아동이, 엄마의 구금으로 인해 5,278 명의 아동이 영향을 받으므로 대략 총 115,037명 아동이 부모의 구금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⁰⁾ 2019년 2월에 보고서를 발행한 민간단체인 CREST는 영국에 약 312,000명의 아동이 부모의 구금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하였다.¹¹⁾

영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여성 수용자 숫자의 증가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성 수용자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6월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여성 수용자 숫자는 3,831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5% 정도이다.¹²⁾ 여성 수용자의 5분의 1은 구금 전에 싱글 맘이었으며, 엄마의 구금 후 남겨진 아동의 5%만이 그들의 가정에 그대로 있으며, 남겨진 아동의 9%만이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국 전역에 임신부 여성 수용자가 매년 600명 정도이며, 교도소에서 탄생한 아기가 약 100명 정도이다.¹³⁾

영국에는 총 12개의 여성 교도소가 있으며 이 중 6개 교도소는 “엄마와 아기 유닛(Mother and Baby Unit, MBU)”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¹⁴⁾ 미국과 달리 교도소에서 출산한 여성이 아니더라도 18개월 이하의 영유아 아기가 있는 경우의 여성 수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9) <http://www.prisonreformtrust.org.uk/PressPolicy/News/vw/1/ItemID/545>

10) https://childrenofprisoners.eu/facts_and_figures/statistics-england-and-wales/

11) <https://www.nicco.org.uk/userfiles/downloads/5c90a6395f6d8-children-of-prisoners-full-report-web-version.pdf>

12) <https://www.womeninprison.org.uk/research/key-facts.php>

13)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

14)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수용자 자녀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은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가족센터, 도움의 전화, 교도소 방문지원 등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 역시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아거나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숫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 2019).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F.E.A.T (which stands for Fostering, Empowering and Advocating Together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에 의하면 온타리오 주에만 5만 명 아동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며, 전국적으로는 매년 370,000명의 아동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¹⁵⁾

McCormick과 동료들(2014)은 연방 교도소 수형자의 반 이상이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분석하였으며,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인 JustKids는 매년 4만 5천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며, 누적으로는 256,000 명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⁶⁾ 2015년 신문기사에서는 180,000명의 아동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금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¹⁷⁾

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2018)는 2017년에 357,604명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캐나다 미성년자의 4.6%에 해당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약 25만명~35만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수용자와 원주민 여성 수용자의 증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가시킨다. 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2018)는 2003년에 25,000명 아동들이 엄마의 구금을 경험했으며, 연방 시설 입소 여성 수형자의 70%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여성 수용자는 사회에서 아동을 부양하는 책임을 가졌던 것인 남성의 2배임에 주목하며 여성 수용자 자녀가 더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Saussure(2018)는 2015/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원주민은 인구의 3%이지만 교정시설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취약한 계층인 이들 자녀도 위기라고 분석하였다.¹⁸⁾

15) <http://featforchildren.org/>

16) <http://www.just-kids.ca/kidsin crisis.html>

17) <https://torontoist.com/2015/10/supporting-the-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18) <https://policyoptions.irpp.org/magazines/may-2018/parents-in-prison-a-public-poli->

이러한 우려는 캐나다 국가 공식통계에서도 그대로 들어난다. 캐나다의 여성 수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2018년에 구금 시설 유입된 여성 수용자의 숫자는 총 36,001명(연방 564+ 주 35,437)으로 전체 수용자의 14.5%에 해당된다¹⁹⁾. 2007/2008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가 있었는데, 원주민 여성 수용자가 주립 교도소에서 42%, 연방 교도소에서 40%, 일반 여성이 연방교도소에서 7%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일반여성의 주립 교도소 인원만이 8% 감소했을 뿐이다. 전체적인 수용자 숫자가 감소하는 반면 여성 수용자, 특히 원주민 여성 수용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현재 캐나다에서는 교정시설 내 아기와 엄마의 거주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국과 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01년에 연방 교도소가 “Mother-Child Program(MCP)”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현재 연방 교도소 5개 기관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만이 유일하게 “Mother-Child Program(MCP)”을 제공하고 있다(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 2019). 그러나 영국과 동일하게 캐나다는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임신부가 출산한 아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양육하던 아동의 나이와 지원조건이 맞는다면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수용자 자녀지원 면에서는 수용자 자녀라는 면에서의 두드러진 특색은 없다. 캐나다 연방 교정국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거주 요소(non-residential components)가 활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거주 요소란 엄마와 아동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함께 거주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녀와 수용자의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비거주 요소로는 가족방문, 사적인 가족방문(private family visit), 동화책 기록, 엄마 수용자가 모유를 짜서 보존하고 이를 아기에게 전달하는 것, Child Link 화상 접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²⁰⁾

Private Family Visiting program은 우리나라의 가족만남의 집과 동일한 형태로써, 2개월마다 한 번 실시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독립된 공간인 오두막에서 72시간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는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교정시설 앞에서의 “교도소 방문센터”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응이 미진한 상황에 대해 단체들은 캐나다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2018)는

cy-blind-spot/

19) <https://www150.statcan.gc.ca/n1/pub/85-002-x/2019001/article/00010-eng.htm>

20) <https://www.csc-scc.gc.ca/lois-et-reglements/768-cd-eng.shtml>

2017년에 521개의 법원 판결 분석결과 단 한건도 미성년자 자녀를 고려한 양형은 없었다고 발표하며 캐나다 정부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하였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 지원 단체인 John Howard Society는 관련 정부기관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캐나다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없다”라며 캐나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²¹⁾

Ⅲ. 엄마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1. 미국의 교정 시설 내 거주 프로그램

현재 미국의 여성 교도소 가운데 엄마와 아기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교도소는 총 15개로서, 5개의 연방교도소와 10개의 주립 교도소이다.²²⁾

가장 처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교도소는 1901년 뉴욕 주의 버포드 힐 여성 교도소였으며, 이후 여성 수형자가 급증한 캘리포니아 주가 1985년에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지속된 여성 수용자 숫자의 증가와 임신부 수용자의 증가로 인해 점진적으로 여성 교도소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네브라스카 주 1998년에 사우스 다코다 주, 1999년에 워싱턴 주, 2001년에 오하이오 주, 2007년에 일리노이 주, 2008년에 인디애나 주, 2009년에 웨스트 버지니아 주, 가장 최근인 2010년에 텍사스 주가 엄마와 아기 유닛의 문을 열었다. 와이오밍 주의 경우 2014년에 엄마와 아기 유닛을 마련하였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²³⁾ 따라서 현재로서는 총 11개의 여성 교도소에서 엄마와 영유아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여성 교도소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적은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연방 교정국과 10개의 주립 여성 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마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²⁴⁾ 여성 수용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동관련 범죄 전과는 안 되며, 폭력사범 및 마약사범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21) <http://johnhoward.ca/blog/children-jailed-parents-also-victims-crime/>

22) <https://qz.com/1587102/what-its-like-to-give-birth-in-a-us-prison/>

23) <https://www.wyofile.com/born-behind-bars-wyomings-approach-to-pregnancy-in-prison/>

24) 각 교정국 홈페이지 참조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신건강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요구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거주 기간으로는 가장 짧게는 30일(사우스 다코다)에서 최장 6년(캘리포니아)이며, 보통 1년~ 2년 정도이며 취지는 엄마가 출소할 때 아기와 함께 사회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워싱턴 주, 인디애나 주 등 7개 주는 여성 교도소 내에 별도의 유닛(unit)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초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뉴욕 주는 교도소와 분리된 별채(wing)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위탁 경영을 맡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사회 내 시설에서 엄마와 아기가 거주하며,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 교도소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 내에 위치한 5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에서 아기와 엄마가 거주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와 아기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가 운영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도움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텍사스 대학과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선별작업을 거쳐 선발된 동료 수형자들이 엄마들의 육아를 돕고 있다.

출산 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연방 교도소 5군데가 유일하며,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곳은 뉴욕 주로서 위탁 경영을 하는 “Hour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여성 수형자가 출소한 후에도 본 단체에서 제공하는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을 여성 수형자가 부담해야 하는 곳은 연방 교정국과 사우스 다코다 주이다.

〈표 1〉 미국 교정시설 엄마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이름	지원자격	지원조건	거주기간	공간	기타
연방	엄마와 아기의 함께 하는 양육 (Mothers Infants Nurturing Together)	저 위험군 5년 이하 형량	부모교육	출산 2개월전 ~ 출산 후 3개월	중간처우의 집	여성 수형자 비용 부담
뉴욕 주	베드폴드 힐즈 탁아소(Bedford Hills Nursery)	아동관련 범죄 안됨 아동복지국 기록 조사	8주간의 태아기 수업 9주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12개월 (가석방/출소 시 18개월) 26명 정원	분리된 별채 (wing)	비영리 재단인 "Hour Children" 위탁 운영 동료 도우미
일리노이 주	엄마와 아기(Moms and Babies)	비폭력 성범죄 안됨 형량 24개월 이하 (동반출소)	부모교육 이수	24개월	분리된 별채	상담사와 도우미
캘리포니아 주	지역사회 수형자 엄마 프로그램 (Community Prisoner Mother Program)	폭력범죄자 안됨 (단 전과없고, 남편 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능)	행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 진단	90일~6년 24명 정원	지역사회 내 기숙사형 공간	민단단체의 위탁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
워싱턴 주	양육주거 프로그램 (Parenting Residential Program, PRR)	아기 출생 후 형량이 3년 미만	전과, 행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 진단 부모기술, 아동발달, 영양, 가족관계 프로그램	30개월 (가석방 시 그 이상도 가능)	교도소내 별도의 유닛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
오하이오 주	성공적 아기돌봄 성취(Achieving Baby Care Success)	비폭력 범죄자, 아동관련 범죄자, 마약사범 안됨	부모교육 수료	36개월	교도소 내 별도 유닛	개별 맞춤형 처우 계획서
인디애나 주	위 원즈 탁아(Wee Ones Nursery, WON)	폭력범죄자, 아동관련 범죄자, 교도소 내 규칙위반 자 안됨 8학년의 읽기능력	부모교육 수료 의료 및 정신건강 진단	18~24개월 10명 정원	교도소내 별도의 유닛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동료 도우미
네브라스카 주	탁아소 프로그램(The Nursery Program)	아동대상 범죄자, 약물남용 안됨 출소 24개월 남긴 모범수	부모교육	18~24개월 동반 출소 15명 정원	교도소 내 별도 유닛	

	이름	지원자격	지원조건	거주기간	공간	기타
사우스 다코다 주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Mother Infant Program)		부모교육 정신건강 진단	30일	교도소 내 별도 유닛	비용 부담
텍사스 주	아기와 엄마 유대 이니셔티브(Baby and Mother Bonding Initiative, BAMBI)	형량 1년 미만 중범죄자, 이민법 위반자,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안됨	정신건강 진단 (텍사스 대학 의대 도움)	12개월	교도소 내 별도 유닛	텍사스 대학 프로그램 제공
웨스트 버지니아 주	성공적인 아기발달 프로그램(Keeping Infant Development Successful, KIDS)	성범죄, 폭력범죄 안됨	정신건강, 의료건강 진단 부모교육 이수	18개월(연장 가능)	교도소 내 별도 유닛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 지역과 단체 도움

2. 미국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그룹홈 New Expectations Group Home

2014년부터 델라웨어 주에서는 보호관찰을 받은 임산부나 어린 엄마가 함께 거주하며 아기를 양육하는 그룹홈을 제공하고 있다²⁵⁾. 교정 및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Connections Community Support Programs”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그룹홈(New Expectations Group Home)으로서 약물 위험이 있는 임산부와 엄마 범죄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을 받는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시설에 들어와서 출산 후 6개월까지 본 그룹홈에 머물 수 있다. 폭력범죄자나 아동대상 범죄자는 안되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약물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주중에 Connections' integrated health clinic에서 매주 4시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중 밤에 1번, 토요일 1번 등의 가족 방문이 가능하다. 엄마와 아기 17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첫해에 289,000달러의 비용이 투자되었는데, 델라웨어 교정국과 일반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다. 교정당국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대안이 있음을 알렸다.

약물, 흡연 등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징역형이 부과되어 교도소로 가야 한다. 출원 무렵에는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해 주고 있다.

25) <http://www.connectionsosp.org/our-services/other-programs/new-expectations/>

3. 영국 교정시설 “엄마와 아기 유닛 (Mother and Baby Unit)” 프로그램

미국이 유사하지만 주마다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에, 영국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6개 여성교도소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인 “엄마와 아기 유닛(Mother and Baby Unit)”을 운영하고 있다.²⁶⁾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미국과 달리 영국은 임신부 여성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출산한 경우와 여성 수용자가 사회에 18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교정당국이 제시하는 자격조건을 살펴보면²⁷⁾ 입소 위원회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는데, “형량과 범죄유형을 검토한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교정 직원과 아동복지국 직원 및 다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입소위원회. 임신부 수용자가 아니더라도 18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2명까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기간을 살펴보면 함께 거주하는 아기가 18개월이 되면 엄마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Abbott(2018)는 일반적으로 엄마의 형기가 18개월 이상이면 임신부 수용자의 입소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외부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능한 한 엄마와 아기가 동반 출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엄마의 형기가 18개월 이상이어서 같이 거주하던 아기가 분리되어야 할 상황이 오면 사회복지국이 여성 수용자와 논의를 해서 향후 아기의 거취를 결정한다.

입소 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소센터에서의 안내 → 신청서 작성 → 입소위원회의 결정 → 입소위원회의 지원자 심리(hearing) → 입소위원회의 최종결정 → 주지사에게 통보 후 주지사의 최종 승인

입소위원회는 “임시 입소(Temporary admission)” “긴급 임시 입소(Emergency temporary admission)” “완전한 입소(Full admission)” “조건부 거절(Conditional refusal)” “완전한 거절(Full refusal)” 등 5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지원자에게 통보되며, 거절을 통보받은 지원자에게는 항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26)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27) <https://www.justice.gov.uk/downloads/offenders/psipso/psi-2014/psi-49-2014-mother-and-baby-units.pdf>

입소위원회가 엄마와 아기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면, 임신부 여성 수용자는 출산을 6주 앞둔 시기에 분리된 유닛인 엄마와 아기 유닛에 배치된다. 본 유닛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매우 엄격하며, 매 8주마다 여성 수용자가 계속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심사된다.

여성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상담, 필요한 의료처우, 적절한 영양, 교육에 참여한다. 엄마와 아기 유닛은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 등록되고 이에 합당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유닛 근무 직원은 영국 아동법에 부합하는 책무를 지니게 된다. 엄마와 아기 유닛의 운영 비용은 아동복지국의 아동지원(Child Benefit)으로 운영된다²⁸⁾.

4. 캐나다 교정시설 엄마와 아동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 MCP)

캐나다 연방 교정국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은 연방 교정시설에서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 MCP)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정부 차원으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가 유일하게 엄마와 아기가 거주하는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이래, 1995년에 연방정부는 MCP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으며, 준비를 통해 2001년에 MCP가 완전히 시행되었다.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엄마 수용자의 자격조건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에 Public Safety Canada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기존의 12살에서 6세로 낮춰졌으며, 학령기인 5세 부터는 파트타임으로만 거주할 수 있다 (Brennan, 2014).

1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엄마와 아기 시설을 운영하는 주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로서 이미 1973년부터 여성 수형자가 구금 중에 출산하면 함께 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Brennan, 2014). 그러나 2008년에 이 프로그램이 문을 닫았고, 이에 대한 법정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대법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6개월 이내에 다시 문을 열 것을 (Brennan, 2014). 이에 2014년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이 참여 조건을 엄격하게

2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other-and-baby-units-applications-and-admissions>

결정하여 참여자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²⁹⁾

연방 교정국이 제시하는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 MCP)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puty Commissioner for Women은 MCP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교도소장은 MCP 책임자를 지명하고, 지원자의 참여를 승인하며, 지원을 검토할 review board를 지정해야한다. MCP 코디네이터는 의료국장, 원주민 담당자, 성직자, 가석방 담당관과 함께 협력하며, 수용자가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수용자의 조건으로는 미디엄 및 미니멈 경비 등급에 거주하는 수용자로서 아동대상 범죄, 아동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지원할 수 없다.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아동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양육하던 아동도 거주가 가능하며, 4세까지는 엄마 수용자와 하루 종일 거주할 수 있는 풀타임 거주 자격이 주어지며, 학령기인 5세부터 6세까지는 일정 시간만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거주 자격이 주어진다.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은 여성 수용자는 본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과장은 신청자의 정신과 적, 심리적 진단을 실시한다. 가석방 담당관은 또한 해당 여성 수용자의 자녀가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Community Assessment를 작성하고, 이러한 서류들은 Review Board와 교도소장이 검토한 후, 아동복지국이 아기가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과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최종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유닛은 개인 방은 물론 공동 공간이 거실과 부엌이 있으며, 외부의 놀이공간도 주어진다.

29) <https://www.thestar.com/news/world/2016/07/17/mother-child-prison-program-giving-babies-mothers-a-better-chance.html>

<그림 1> 연방 교도소 Fraser Valley Institution



*출처: <https://www.pressreader.com/canada/national-post-latest-edition/20170123/281505045929430>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TdrRf3UrB8>

엄마 수용자는 교육 및 교도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는 동료 수용자가 베이비 시터로 활동한다. 베이비 시터 역할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자격조건 또한 엄격한데, 엄마와 동일하게 아동대상 성범죄나 아동에 위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는 자격이 안되며, 지원자의 아동복지국의 등록 사항에 대한 전력이 조사된다. 미디엄이나 미니멈 경비 등급 수용자 만이 자격이 있으며 양육 기술 프로그램과 응급처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엄마 수행자의 동의도 있어야 베이비 시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엄마와 아기 유닛에는 일반 수행자도 거주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아동대상 범죄, 아동에게 위해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아동복지 전력이 조사되고, 가석방 담당관과 보안담당 교도관이 이들에 대한 교정시설 생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MCP 코디네이터는 30일마다 여성 수용자를 만나 이 사람이 본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한다.

만약 아기가 교정시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가석방 담당관과 코디네이터는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전이 계획(Mother-Child Program Transition Plan)”을 수립한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방 교정국이 5개의 여성 교도소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가 1개의 여성 교도소에서 엄마와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Canadian Friends Service Committee, 2019)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2~3년 이상이면 연방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그 이하의 징역이면 지방 교정시설에 수용된다는 점(the Law Library of Congress, 2014)을 감안 할 때 주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 교정시설에서의 MCP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수용자에 대한 기록 또한 제한적이다. 2014년에 미 국회 도서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에는 14명의 아동이 연방 교정시설에서 거주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8명만 풀타임으로 거주하였으며, 2003년에는 261명의 연방 여성 수용자 가운데 3명만이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460명의 연방 교도소 여성 수용자 중에 4명만이, 2012년에는 603명의 연방 여성 수용자 중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the Law Library of Congress, 2014). 이에 연구자들은 여성 수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Kanaboshi(2017)는 시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최종 결정을 하는 아동 복지국이 자격조건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며, 설령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최초의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고, 부모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분석하였다.

IV. 수용자 자녀지원

1. 수용자 자녀지원 법 제정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령의 제정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오클라호마 주와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주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 오클라호마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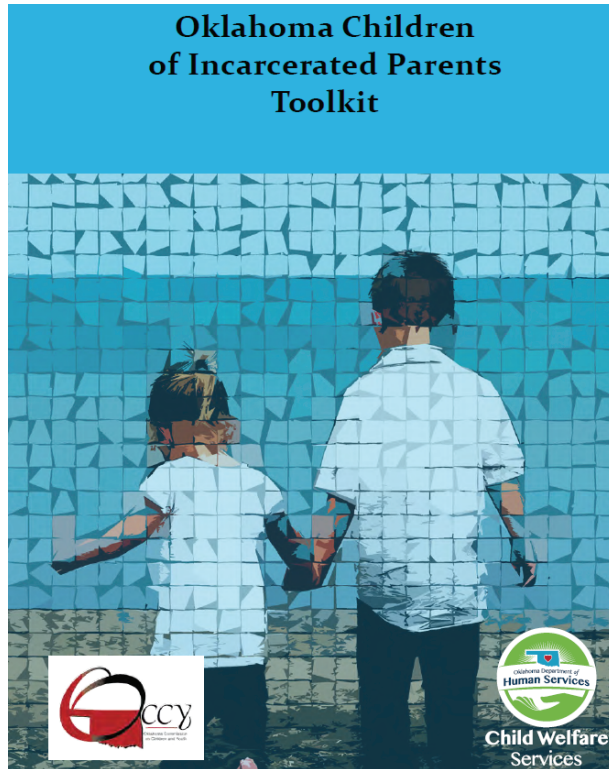
오클라호마 주 정부는 2001년에 SB 133을 통해, 부모가 구금된 아동을 위해 가족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계획수립 및 자문 위원회(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만들도록 하였다³⁰⁾. 2012년에는 HB 2300을 통해 Oklahoma Commission on Children and Youth (OCCY)가 “Oklahoma Mentori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rogram” 을 설립하여 수용자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³¹⁾. SB 1991 OCCY는 수용자 자녀의 필요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조율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한 기존의 서비스에 대해 알린다. 또한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기관들과 서비스 공급업자들을 조율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2014년에는 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the Oklahoma Commission on Children and Youth and the Oklahoma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dvisory Committee는 협력하여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툴킷을 발행하였다(그림 2 참조).

30) https://www.oregonlegislature.gov/citizen_engagement/Reports/2001SummaryOfLegislation.pdf

31) <https://www.okhouse.gov/Documents/2012%20Session%20in%20Review%20Publication.pdf>

〈그림 2〉 수용자 자녀지원 툴킷



*출처: <http://www.okdhs.org/OKDHS%20Publication%20Library/14-63.pdf>

나. 워싱턴 주

2005년 워싱턴 주 정부는 Substitute House Bill 1426를 제정하고, 수용자 자녀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³²⁾. 2007년에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E2SHB 1422 (Chapter 384, Laws of 2007)를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Children and Families of Incarcerated Parents Advisory Committee”가 만들어지고, 본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련된 권고들에 관하여 보고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가, 아동권리 옹호자, 워싱턴 주 인디언 부족 대표자, 법원 관계자, 경찰, 주정부 직원, 복지국, 교정국, 초등 교육국 등 다기관 협력체이다.

32)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incarceratedparents/pubdocs/cfip2008committeereport.pdf>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프로그램, 정책,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검토
- 검토를 통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인지와 권고안 제시
- 자금 사용에 대한 권고
- 권고안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 1월에 국회에 연례보고서 제출

교정국, 복지국, 초등교육국, 경찰 등 관련기관에게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가족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펜실베이니아 주

2017년 펜실베이니아 주는 비폭력 사범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First Chance Act”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³³⁾. 특히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First Chance Trust Fund”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기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이나 단체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매년 \$500,000 ~ \$1 million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자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원이 되고 단체들은 저소득층, 범죄율 높은 지역의 수용자 자녀 및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업을 지원하고 학교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2.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의 홍보

펜실베이니아 주는 2017년에 수용자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법인 “Second Chance Act”를 제정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부합되게 펜실베이니아 교정국은 다른 주와 달리 교정국의 공식 홈페이지 상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33) <https://www.thecollegefix.com/pennsylvania-bill-provide-scholarships-children-incarcerated-parents/>

〈그림 3〉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 홈페이지



*출처: <https://www.cor.pa.gov/family-and-friends/Page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aspx>

홈페이지 상에 교정국이 제시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를 주립 교도소 프로그램들은 크게 부모 접견 시 이루어지는 지원과 부모가 사회에 있는 자녀를 위해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Sesame Project는 교도소 방문 룸에 아동/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놀이감을 제공하며, Inside Mnuncy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수용자와 자녀가 만나서 운동하고 다과를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며, Special Space 프로그램에서는 방문공간을 친 아동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놀이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uppy program에서는 개 훈련에 활용되는 강아지들과 방문한 자녀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하였다. Read to your children 프로그램은 수용자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녀에게 선물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 외에도 남성 교도소와 여성 교도소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 가족만남의 날 등을 수용자 자녀지원의 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뉴햄프셔 교정국의 가족 결속 센터 운영

뉴햄프셔 주 교정국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1998년에 이미 수용자 자녀와 가족지원을 목표로 뉴햄프셔 대학과 파트너 십을 구축

하여 "Family Connections Center"를 설립하였다³⁴⁾. 여성 교도소 한 곳과 남성 교도소 두 군데에 본 센터를 설치하고 부모 수용자들이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4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저지른 수용자는 참여할 수 없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부모교육과 양육교육, 자녀의 트라우마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동료 수용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자녀를 위한 오디오 북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자녀가 방문했을 때 함께 가족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교도소 측이 진행하는 아버지 캠프와 자녀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매달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4. 영국의 교도소 방문 경비 지원 "Assisted Prison Visits Scheme"

영국에서 교정과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부서인 "Her Majesty's Prison & Probation Service"는 저소득층 가정의 수용자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Assisted Prison Visits Scheme"을 운영하고 있다.³⁵⁾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수용자의 가족, 수용자의 파트너, 수용자 가족은 아니지만 어떠한 접견자가 없는 수용자를 방문하는 저소득 자 및 가정이어야 하며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원받는다. 만약 방문자가 아동을 동반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들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도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이들도 지원금을 받는다.

5. 영국과 캐나다의 가족 친화적 방문 센터(visitor center) 운영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교도소에서³⁶⁾, 캐나다의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 연방 교도소에서³⁷⁾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방문센터를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방문센터들은 교도소를 들어가기 전, 교도소 밖의 입구에 위치하며 수용자를 방문하는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방문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그

34) <https://www.concordmonitor.com/Family-Connections-Center-marks-20-years-in-NH-20443635>

35) <https://www.gov.uk/help-with-prison-visits>

36) <http://www.partnersofprisoners.co.uk/wp-content/uploads/2013/01/VISITOR-INFORMATION- BUCKLEY-HALL-v4.pdf>

37) <https://www.cfcn-rcafd.org/>

림 4, 5 참조). 민간단체들은 이 공간에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있다.

〈그림 4〉 영국 가족 친화적 교도소 방문자 센터



*출처: <http://www.partnersofprisoners.co.uk/what-pops-do/prison-visitor-centres/>

〈그림 5〉 캐나다 가족 친화적 방문센터



*출처: <https://www.cfcn-rcafd.org/>

6. 영국의 도움의 전화

영국의 "Her Majesty's Prison & Probation Service"는 가족 구성원의 체포와 재판, 구금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국가 수형자 가족 도움의 전화(National Prisoners' Families

Helpline)”를 운영하고 있다.³⁸⁾ 본 서비스는 수용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Prison Advice and Care Trust(PACT)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국가 수형자 가족 도움의 전화



For advice and support on all aspects of arrest, going to court and prison.

Helpline opening hours:
Monday - Friday 9am - 8pm
Saturday and Sunday 10am - 3pm

Prisoners' Families Helpline

Providing information and support for the families of offenders and prisoners in England and Wales

*출처: <https://www.prisonersfamilies.org/category/slideshow/>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교정시설 내 엄마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과 수용자 자녀지원 현황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을 살펴보았다. 세 국가 모두 수용자 자녀에 관한 국가 공식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 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의 공식적인 운영 형태는 우리나라의 엄마와 아기 지원, 수용자 자녀지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가지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교정제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교정시설 내 엄마와 아기 거주 지원

(1) 명확한 절차와 가이드 라인 수립, 엄격한 운영

미국, 영국, 캐나다 모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명확하게 제

38) <http://www.pact.co.uk/>

시하였으며, 참여와 결정 절차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엄마와 아기 유닛이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 등록되고 이에 합당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유닛 근무 직원은 영국 아동법에 부합하는 책무를 지니게 되는 점 등은 영유아가 바르게 양육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와 정신건강 진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가 부모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미국의 일부 주,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엄마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한 진단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엄마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엄격하게 진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영국의 경우 유닛 운영 비용은 아동복지국의 아동지원(Child Benefit)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그 운영에 있어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대표적인 아동지원 프로그램인 "Early Head Start"가 도입이 되어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의 프로그램들은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고,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4) 동료 수형자 훈련을 통한 인력 활용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엄격하게 선발된 동료 수형자가 교육을 받아서 엄마 수용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5) 엄마와 아기 유닛 공간 활용을 위한 일반 수용자 선발과 거주

캐나다의 경우에는 엄마와 동일하게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친 일반 수용자가 엄마와 아동 유닛에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시설이 이용자가 없어서 비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출소 후 지원: 출소 전 및 아기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국 직원이 엄마 수용자와 아기에 향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가석방 담당관과 코디네이터가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전이 계획 (Mother-Child Program Transition Plan)”을 수립한다. 미 오하이오 주 역시 여성 수용자와 아기를 위한 개별 맞춤형 처우 계획서가 수립된다. 뉴욕 주는 유일하게 엄마와 아기 유닛을 위탁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출소 후 여성 수용자와 아기를 위한 거주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7) 교도소 내 출생 뿐 아니라 외부에 자녀도 함께 거주

미국의 경우에는 여성 수용자가 입소 시 임신한 상태여야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입소 시 임신이 아니더라도 사회 내 있는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었다. 영국은 18개월 까지, 캐나다는 6세까지의 자녀들은 함께 거주코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엄마와 영유아 자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8) 보호관찰 임산부 그룹홈 거주

델라웨어 주는 보호관찰을 받은 약물남용 경력의 임산부와 어린 엄마가 거주하는 그룹홈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 규칙은 엄격하며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아기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 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비폭력 여성 사범이 사회 내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형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2. 수용자 자녀지원**(1) 관련 법령 제정**

오클라호마 주,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주는 수용자 자녀는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고 이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모니터링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2) 교정국의 홍보

펜실베이니가 교정국은 홈페이지에 관련 법령은 물론 교정국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일반 대중은 물론 수용자 가족과 자녀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의 지원을 인식토록 하였다.

(3) 영국의 교도소 방문 경비 지원

영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도소 방문 경비를 지원하여 수용자 가족의 방문을 활성화하여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 영국과 캐나다의 가족 친화적 방문센터 운영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교도소 밖, 정문 옆에서 민간단체들이 수용자 가족들이 설 수 있고 정보를 받고, 공유할 수 있는 방문센터를 운영토록 허용하였다.

(5) 영국의 도움의 전화

영국은 가족 구성원이 체포, 재판, 구금을 겪을 때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위로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움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 미국, 영국, 캐나다”에 대한 토론문

양 현 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여성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198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이 약 7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교도소 수용에 따라 밖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는 여성이 수감자가 된다고 하여 다르지 않다. 남성 가장이 수용되었을 경우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격하가 문제된다면, 여성인 가족이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악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성이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과 훈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본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과 함께 양육과정의 단절을 경험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공범이 아닌 한 범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의 수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과 가족의 해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넓게 보면 범죄자의 가족들 역시 범죄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범죄자 가족을 단순히 범죄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족의 유지와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서기관

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의 지원은 사회복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피해자 자신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범죄자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는 범죄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고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현재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리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대체로 수형자의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지만 수용자 가족과 다른 저소득층 가족을 구분하는 특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이점은 수용자 가족의 경우에도 일반 사회복지 수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뿐 별도의 고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형자 가족이라고 하여 일반 저소득 가정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수형자 가족들의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정보 부족과 사회적 자원에 대한 낮은 접근 가능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격차와 접근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 가족 지원의 핵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나 법무보호복지공단(깁보)의 지원은 재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 비록 재소자에 대한 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확실한 재범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출소 이후나 가족의 복지 문제는 사회복지 부서의 영역으로 교정기관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교정기관 역시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재소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수집,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 망은 충분히 구축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재소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와 원호의 주체로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관의 개입은 주로 가석방 등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귀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개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사회자원의 증재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용자 가족의 상태와 필요성(needs)을 파악하는 정보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 없이 민간단체나 독지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지원활동의 체계화, 제도화를 위해 재소자 가족지원에 관한 독자적 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근거법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부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재소

자 가족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외국의 예와 같이 재소자 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가족지원을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도소내 양육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과 기간의 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생후 18개월 까지 교도소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외부의 가족이나 보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사회 자원의 연계나 중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형태는 우리나라 재소자 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 정비에 여러모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수용자 임신부 및 가족 지원 실태 및 사례

장 선 숙*

1. 임신부 수용자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임신부 처우

- 의료거실 지정
- 임신 주기에 적절한 정기검진 실시

2) 출산

- 미결 수용자 :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 출소 후 출산. 출산 후 일정기간 조리후 재입소
- 기결 수형자 : 형집행정지 출소 후 출산. 출산 후 일정기간 조리 후 재입소

2. 양육유아

형집행법 제53조(유아의 양육)

-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 법무부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교감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 양육 절차

① 유아의 양육 허가 요건

- 유아의 생모 여부 및 유아 생년월일 확인
- 유아 및 임신부인 수용자 건강상태 확인

② 유아 양육 허가시 조치사항 : 양육유아신청서 작성

③ 양육 신청 불허시 조치사항 :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 인도 또는 해당 교정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유아 인도

④ 허가 후의 조치

- 육아거실을 지정 운영하고 필요한 설비의 물품을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유아양육 필요한 조치

- 전기판넬 및 조도조절기 등을 설치하여 안락한 육아환경을 조성한 육아거실 지정 운영
- 접견 및 출정 동행시 유모차, 포대기 등을 이용하여 유아와 동행하고 보호장비 탄력 사용
- 매일 온수지급, 거실 내 실시. 매일 세탁, 실외운동 1시간 이내
- 놀이방 설치 운용 : 지정거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고 놀이환경 조성(현재 청주여소 구비)
- 유아용품 물품 교부 및 관리: 부피가 크거나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관급 구입으로 공동사용하고, 분유,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양육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보건소 등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통해 적기 실시, 육아거실 및 육아용품 등은 수시로 소독 관리한다

■ 여성수용자 임신부 및 양육유아 현황(2009~201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4	16	19	29	23	16	20	23	30	29
임산부	8	10	8	13	13	7	9	12	20	19
양육 유아	6	6	11	16	10	9	11	11	10	10

출처: 2019 교정통계연보

출산 및 양육유아 사례

■ 대상

박00(22세). 2017년 9월 사기사건으로 입소(4건 병합되어 22개월 수용), 소년원 이력 다수, 보호자 없음.

■ 경과

- 수용중 출산예정일 1개월 전 구속집행정지 출소
- 지인의 주거에서 생활하다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여아 출산
- 3일 입원 후 퇴원(병원비는 전 임신부 대상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출산 후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후 입양 의뢰
- 출산 후 1개월 후 재입소(입소 중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추가사건 발생)
- 입양 대기중이던 자녀(당시 7개월)를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신청하여 상담 실
- 양육의지 강하고 불허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
- 추가사건 종료 후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
-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아이 돌사진 및 작은 돌잔치 해줌
- 2019. 1월 출소
- 교정위원의 돌봄
- 기대와 다른 현실을 인지하고 2019. 6월 서울 미혼모(노숙자 쉼터) 시설 입소 - 2019. 7월부터 공공근로 시작
- 2019년 11월 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

※미혼모 산후조리비용지원-지자체에서 입양숙려사업에 의해 70만원 지원

3. 수용자 가족지원

1) 미성년 자녀 지원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세움에 추천,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 학습지원, 상담지원, 보호지원을 받음

- ① 허00(35세, 마약) 딸 2(19세, 12세)
- ② 정00(47세, 절도) 아들 (13세)
- ③ 이00(47세, 사기). 딸 2(14세, 쌍둥이)
- ④ 안00(35세, 살인) 딸(12세), 부(73세, 고령 지체장애) 및 제(32세, 지적장애)

2) 가족지원 효과

- 가해자 자녀가 제2의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 예방
-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주제발표 3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사업을 중심으로 -



제3주제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사업을 중심으로 -

김기환*

I. 서론

1.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필요성

출소자가 입소 이전에 가진 범죄와 관련되는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범죄유발요인은 개인 성격적 특징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 개인의 성격적 특징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인지나 정서, 행동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심리적 치료를 기할 수 있고 환경적 원인이 작용한 경우 경제적 문제, 안정된 직업, 가족문제의 해결 등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작용하는 요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범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벌위주의 정책은 효과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하여 범죄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아니라 주거지원, 취업지원, 가족관계회복지원, 상담 및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갱생보호가 우선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¹⁾. 즉 범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서기관

1) 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총서 09-03 p36.

죄를 제지하기 위한 엄벌위주의 증상처방이 아닌, 범죄가 일어난 원인을 살펴 재발방지와 더불어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인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한 정책의 구현을 위해 증거기반의 재범방지정책과 실천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또한 단순한 범죄의 재발을 회피하려는 관점이 아닌, 범죄를 발생시키는 욕구를 파악하고 범죄로부터의 절연을 강화하는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범예방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연방 리엔트리 자원센터(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는 제 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에 의해 시행된 여러 리엔트리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교육과 취업, 주거,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치료와 더불어 가족지원을 제시하고 있다.²⁾

출소자들이 출소 후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격려와 지지는 재범감소에 중요한 요인이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출소자와 가족, 특히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으로 범죄의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출소자 개인 위주로 관리, 지원하는 기존의 갱생보호서비스의 방식은 재범을 방지하는데 다소 한계에 봉착하였다.³⁾

출소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가족단위의 접근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구축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며, 가족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출소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효과는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공동체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족과 협력하여 출소자의 취업, 대인관계, 심리적 문제, 알콜이나 약물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⁴⁾

2009

2) 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Reentry Matters-Strategies and Successes of Second Chance Act Grantees, November 2018

3) 신이철·정진연, 가족지원사업의 법률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해외동향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p8, 2014/이인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57권 p142, 2015

4) 강호성,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보호관찰 제 18권 1호 p 246, 2018

2. 출소자지원사업의 근거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소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 직제상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다. 동 법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공단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인 중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⁵⁾에 대해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출소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사업자로 민간의 7개 기관이 갱생보호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등의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자발성에 기반한 운영원칙을 고수하는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담당부서의 인지 또는 미인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갱생보호사업의 한 유형인 가족지원사업현황과 관련하여 민간갱생보호법인이나 미인가 갱생보호사업자는 논외로 한다. 민간갱생보호사업법인의 경우 갱생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나 그 실적이 미미하며, 이외의 미인가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이유에서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열거된 갱생보호사업의 방법 중에서 ‘가족지원사업’ 이외에 가족지원사업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주거지원사업’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그 선정기준에 있어 무주택 출소자 중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단위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포함하여 특화된 가족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해 2014년 가족희망센터(법무보호가족교육원)가 설치되어 특화된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외에 직업훈련, 취업지원, 숙식제공 등도 넓게 보아, 혹은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따라 가족지원 관련성을 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족지원사업의 설명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본 연구가 출소자에 대한 가족지원사업으로 출소자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갱생보호사업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구금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 뿐만 아니라 비구금형,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II. 미국의 가족지원제도 현황

1. 미국의 출소자지원사업 일반

미국의 출소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수형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자의 구금 시기부터 출소 이후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시설내와 사회내의 교정정책이 일련의 연속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범죄자 리엔트리(offender reentry)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형사사법프로그램청(the Office of Justice Program) 소속부서인 형사사법통계국(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2018년 연구자료⁶⁾에 의하면, 2005년 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401,288명 중에서 9년의 기간 동안 체포된 총 회수가 1,994,000건에 이르며, 이는 석방된 수용자 당 평균적으로 5회 가량이 되는 것이다. 석방된 수용자 중 44%는 첫 1년 이내에 체포되어 1년 이내의 재체포율(Rearrest rate)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출소자의 68%는 3년 이내에 체포(재구금(reincarceration)은 57% 가량)되며 79%는 6년 이내에, 그리고 83%는 9년 이내에 체포되었다. 즉 석방된 수용자의 17%만이 9년의 기간 이내에 범죄로 인해 체포되지 않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의 재범률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에서 미연방의 정책결정자, 형사사법전문가, 실무자들은 범죄자의 리엔트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범과 재구금의 악순환 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재범율은 많은 지역사회의 불안을 유발하며, 피해자도 증가케 하여 기존의 과부하가 걸린 형사사법시스템에 더 심각한 부담을 추가시키는 것이며, 구금시설의 운영비용의 증가는 지방정부재정(Municipal Budget)에 큰 악재로 작용해왔다. 지난 20년간 주정부예산항목 중 교정비용이 가장 급속도로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⁷⁾ 미국은 현재 연방, 주, 지방정부의 교정예산으로 85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리엔트리가 건강, 주거지원, 취업, 가족지원, 교육 등 광범위한 이슈와 교차하기 때문에 연방단위의 많은 기관들은 각 영역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엔트리 사업과 관련한

6) 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8 Update on Prosoner Recidivism : A 9-Year Follow-up Period(2005-2014), 2018

7) <https://nicic.gov/offender-reentry-transition> 에서 발췌

집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2. 최근의 리엔트리 동향(second chance act 기금 교부의 전략과 성공사례)

①연방 리엔트리 자원센터(NRRC)

최근 미국의 리엔트리 사업은 2008년 제 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의 제정 이후 설립된 연방리엔트리 자원센터(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 법무부 형사사법지원국 (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에 의해 예산이 주어지고 관리되는 연방리엔트리자원센터는 미국의 리엔트리사업의 주요정보의 원천이면서 가이드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제 2의 기회법에 의해 수혜를 받는 리엔트리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대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략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전략과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리엔트리 분야에서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또는 정보에 근거한 전략(data-driven strategies)이 구현 되도록 지식기반을 제공한다. 더불어 리엔트리사업의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②새로운 리엔트리 전략과 성공사례

2018년 NRRC는 제 2의 기회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제 2의 기회법 교부금을 수여받은 사업주체들의 리엔트리사업의 성공사례와 전략에 관한 제시를 한 바 있다.⁹⁾ 제 2의 기회법 발효 이후 전국적으로 최근까지 900개의 리엔트리프로그램에 대해 교부금이 지원되었던 바, 그 중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효과를 거두었거나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패턴이나 약물중독, 친밀 집단 등 성격이나 환경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또한 그들의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재사회화 욕구(reentry needs)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근거해 재사회화 욕구에 초점을 둔 리엔트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화된 사례계획(individualized case plan)을

8) NRRC의 의사결정주체는 주정부협의회 형사사법센터(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 Justice Center, the CSG Justice Center)이며, 형사사법지원국(BJA)과 청소년형사사법비행예방청(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과 협력하여 NRRC를 운영해 나간다.

9) 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 Reentry Matters-Strategies and Successes of Second Chance Act Grantees, November 2018

수립하고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하였다.

NRRC가 규명한 재범을 억제시키고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주요 보호요인으로는 교육과 취업(Education and Employment), 주거(Housing),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 치료(Treatment for Substance Addiction and Mental Illnesses), 가족지원(Family Support) 등이 있다.

③가족지원사업 성공사례

미국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반 이상이 미성년자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270만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부모를 두고 있으며 이는 아동 28명 당 1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런 어린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주거의 불안정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의 상실로 인한 여러 심리적 문제들과 더불어 사회적 낙인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범죄자의 자녀에게 학업성취도의 저하, 약물중독, 정신적 문제 발현 등의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¹⁰⁾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주거나 경제적 도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도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력한 가족관계는 성공적인 리엔트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족관계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리엔트리 프로그램들은 출소 전, 그리고 출소 이후의 사회복귀과정 전 영역에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출소자와 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들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은 부모양육기술 증진훈련, 동년배 지원, 금융 교육(financial literacy classes), 준비된 가족방문 등을 포함한다.

가족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최근 사례로 버지니아 주 노포크의 The Up Center에서 실시한 아버지 강화프로그램(Strengthening Fathers program)¹¹⁾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출소 전(pre-release) 단계에서부터 출소 후(post-release) 단계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출소 전 리엔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20대까지의 젊은 아빠가 주 대상이다. 부모양육기술훈련, 사례관리서비스 개별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족재결합 지원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는 가족의

10) Susan D. Phillips and James P. Gleeson, "What we know now that we didn't know then about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nvolvement in families with whom child welfare agencies contact" Children, Famili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Chicago: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07) - Reentry Matters - Strategies and Successes of Second Chance Act Grantees November 2018.에서 재인용

11) <https://www.13newsnow.com/article/news/local/strengthening-fathers-program-helps-young-former-inmates-reconnect-with-kids/291-432861384>

건강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가족참여를 확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출소전 단계에서 자녀들의 방문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수용자의 사례계획(case planning) 수립에 참여케도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출소 후 단계에서 멘토와 결연하게 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나 교육,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게 된다. 더불어 노포크카운티의 아동부서로부터 아동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포크 카운티당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아버지강화프로그램의 담당직원은 또한 카운티의 보호관찰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그들의 전환단계의 계획(transition plan)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관여한다. 이런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적 업무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그램 수행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버지강화프로그램은 분노조절기법(stress management technics),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그리고 감사함 느끼기 훈련(cultivation gratitude) 등을 통해 가족간의 건강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연구-기반의 프로그램인 On My Shoulders와 Within My Reach 프로그램¹²⁾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참여자 중 95%는 효과적인 부모양육기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고, 96%는 부모의 양육개입(parental involvement)의 증가를 보였다. 이 중 76%는 컴퓨터관련 자격증 및 고졸검정고시(GED)를 취득하였고, 56%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전일제 고용(unsubsidized employment), 다른 24%는 파트타임고용이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리엔트리에 있어 증거기반 원칙

① 연방의 리엔트리 실천 로드맵

매년 미국 전역에서 연방이나 주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미 연방 법무부는 연방의 리엔트리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리엔트리 로드맵¹³⁾을 공표하고 구금시설에서 출소하는 모든 출소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가족관계가 회복되며 지역사회와 잘 화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12) 'On My Shoulders' 프로그램은 대상자에게 건강한 관계계발, 특히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적절히 맺기 위한 독특하고 상호작용적인 커리큘럼이며 주제는 의사소통, 스트레스 전면, 훈육과 감사 등임. 또한 : 'Within My Reach'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그들의 관계방식이 보다 충만하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컨트롤하는 것을 돕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도구를 통한 기술기반의 프로그램(skill-based program)이다. <https://www.prepinc.com/Content/curricula/Within-My-Reach.htm> <https://www.prepinc.com/Content/curricula/On-My-Shoulders.htm>

13) <http://justice.gov/archives/reentry/roadmap-reentry>, 2019. 11. 13.

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 리엔트리 로드맵은 구금 이후 사회로 재진입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제공하는 실천원칙이나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안내하는 다섯 가지 증거기반의 원칙(five evidence-based principle)을 규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징표하는 원칙적 명제로 “리엔트리는 구금된 첫날부터 시작되며, 출소 이후에도 연속성이 유지된다(Reentry begins on Day One, And, just as important, our involvement does not end at the prison gate.)”를 천명하였다. 이는 범죄자의 리엔트리가 구금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출소이후로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처우를 통해 그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섯 가지 증거기반의 실천원칙

리엔트리 로드맵에서 천명한 다섯가지 증거기반의 실천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 원칙 1 : 수용시 모든 수용자들은 그들의 재범위험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적 리엔트리계획(individualized reentry plan)¹⁴⁾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정(assessment)은 법무부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데 수용자의 범죄경력, 약물경력, 교육수준을 포함한 범죄유발욕구에 관한 주요 정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런 사정을 통해 수용자는 개별화된 사례계획을 제공받아야 하고 출소 이후의 수용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한다.

∴ 원칙 2 : 모든 수용자는 그들의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에 초점을 둔 교육, 직업훈련, 생활기술(life skills), 약물치료, 정신건강치료,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며, 그들의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최대화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전국적 표준화를 통해 이송이나 출소 후에

14) 리엔트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예컨대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주 등) 출소 전과 출소 후 전기간에 걸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동일한 사례관리자가 있으며 시설에서부터 출소 후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공유된 사례계획을 공유하고 실천한다. the Second Chance Act Adult Offender Reentry Demonstration Projects, Evidence-Based Practices : Case Management p 24, 2016

도 일관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분노조절훈련(anger management)이나 양육기술제공, 그리고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같은 개인의 범죄유발욕구를 표적으로 하는 검증된 증거기반의 프로그램에 의해 효과적으로 낮추어 질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단순한 추측이나 수용기간동안 그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바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엄격한 증거(hard evidence)에 의해 커리큘럼화 되어야 한다

∴ 원칙 3 : 수용 중 모든 수용자는 가족관계를 재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출소 시 가능한 지원시스템이 강화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재범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출소이후의 취업과 직업유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소 후의 견고한 지원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금 단계에서부터 가족의 관여(family engagement)가 가능하도록 의미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자녀들이 계발적인 활동에 수용 중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30만 달러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⁵⁾.

∴ 원칙 4 : 지역사회로 복귀 기간 동안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이나 감독부석방 프로그램(supervised release programs)은 출소자에 대한 개별화된 보호의 연속적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방교도소의 출소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의 80% 이상이 사회복귀센터(Residential Reentry Centers, RRCs)나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출소자가 취업처를 찾고 주거를 구하거나 가족과 관계를 재건하고 그 밖에 삶에 있어서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는 출소 이후의 결정적 시기인 한 달간의 프

15) Ministry of Justice, Roadmap to Reentry: Reducing Recidivism through Reentry Reforms at the Federal Bureau of Prison 2016

로그그램에 집중적인 처우 기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원칙 5 : 출소 직전, 모든 출소예정자들은 종합적인 사회복귀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출소 이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제공과 의미있는 지원을 위해 다기관(multi-agency) 연계 및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 제공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연방다기관사회복귀협의회(Federal Interagency Reentry Council)¹⁶⁾는 표준화된 리엔트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함과 아울러 직업, 주거, 가족지원 등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Ⅲ. 가족지원제도의 현황

1. 공단의 가족지원사업 관련 갱생보호사업 개관

1) 가족지원 관련 갱생보호사업 개관

우리나라에서 출소자지원사업은 언급한 바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가족지원사업의 성격을 띠는 공단의 사업을 열거하자면,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인 주거지원사업, 합동결혼식, 심리상담, 가족희망사업, 학업지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주거지원사업과 합동결혼식은 가족지원의 성격을 뚜렷이 띠 뿐만 아니라 독자적 사업으로 구분되어 통계가 산출되므로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가족희망사업(협의의 가족지원사업)을 위주로 가족지원현황을 나가되, 다만 여기서는 주거지원사업과 합동결혼식의 사업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16) 동 기관은 20개의 연방정부기관의 협의체기구로 2011년 결성되었으며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취업, 안정적인 주거제공, 자녀 및 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주거지원사업현황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여 가족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대상은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립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책임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LH공사의 임차주택보증금 지원 및 임대료 감면제공으로, 2년 기간에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지원 주거지원사업이 개시된 2006년 이후 주거지원사업의 수혜인원은 아래 표에 제시된 대로 2,752명으로 총 지원예산은 51억에 달한다.

[표-1] 주거지원 연도별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이전
공급호수	2,048	220	152	152	152	152	1,220
수혜인원	2,752	227	247	260	223	210	1,585
예산	5,120	550	380	380	380	380	3,050

※ 공급호수 : LH공사로 당해연도 공급받는 다세대 임대주택 호수

※ 수혜인원 : 당해연도 신규 또는 재선정(중도퇴거자)되어 주택에 입주한 대상자 수

※ 예 산 : 당해연도에 주거지원사업 임차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

주거지원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자체적인 재범집계 자료¹⁷⁾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공단직원에 의해 인지된 경우만을 집계하였기에, 실제 재범으로 기소되거나 구금이외의 형사처분, 보호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되는 등 실제 재범률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나름 간접적인 사업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사업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재범관련통계는 보호사업의 수혜기간 중 공단에 의해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인지된 대상자의 비율이다. 이런 집계방식은 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로 공신력을 갖출 만한 객관적 지표로 볼 수는 없다고 보므로 재범률 등의 공식적 용어로 명칭 짓지는 않고 재범관련통계라고 서술하였다.

[표-2]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재범관련통계

(단위 : 호, %)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이전
수혜인원	2,752	227	247	260	223	210	1,585
재범인원	90	3	7	6	7	5	62
재범률	3.3						3.9

※ 재범인원 : 주거지원 수혜기간 중 공단직원(가족 등 포함)이 사후관리를 통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재범으로 종료처리된 자

※ 재범비율 : 누적 재범인원 / 누적 수혜인원의 비율

3) 합동결혼식 현황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의 출소자 부부를 위해 결혼식 경비와 행사를 지원하고 이외 각종 후원물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983년부터 2108년까지 총 2,731쌍의 부부들에 대해 지원되었으며 아래 표에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5년간 480쌍에 대해 총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참고로 합동결혼식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10% 이내이고 주로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자체자금으로 지출되었다.

[표-3] 합동결혼사업 연도별 사업현황

(단위 : 명, 천원)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수혜인원	480	99	108	95	95	83
예산	1,009,061	287,568	235,882	214,388	159,337	111,886
1인 지원액	5,594	6,524	6,121	5,618	6,267	3,439

※ 수혜인원 : 당해연도 합동결혼식에 참여한 출소자 수

※ 예 산 : 당해연도에 합동결혼식사업으로 집행된 예산(국고보조금, 자체자금, 기부금품)

※ 1인당 지원액 : 집행예산 중 행사 등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단위가족 당 지원된 금품, 물품의 합계액

아래의 표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합동결혼식 수혜를 받은 출소자 등의 재범관련통계¹⁸⁾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 합동결혼식에 대한 공정식의 연구¹⁹⁾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어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 증대와 지역사회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4] 합동결혼사업 수혜자 재범관련통계

(단위 : 호, %)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수혜인원	480	99	108	95	95	83
재범인원	2	0	2	0	0	0
재범률	0.4	0.0	1.9	0.0	0.0	0.0

※ 재범인원 : 합동결혼 수혜자 중 사후관리기간 중 공단직원(가족 등 포함)이 사후관리를 통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재범으로 종료처리 된 자

※ 재범비율 : 수혜자 중 여타 보호사업기간 중 재범으로 인지된 인원 / 당해년도 수혜인원의 비율

2. 법무보호가족교육원 사업현황

1) 연혁 및 사업목적

(1) 연혁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사업 중 가족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가족지원사업 전담기관 신설의 필요에 따라 20134년 가족희망센터를 개소하였다. 이후 직제개편을 통해 2016년 법무보호 가족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사업 목적

동 가족교육원은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자 및 가족을 심리치료 관점에 기반하여 다양하고 긍정적인 가족활동 경험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가족희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본 가족 교육원은 보호사업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부가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8) 본 재범관련통계는 주거지원사업 수혜자의 재범관련통계와는 달리 합동결혼식이 실시된 당해년도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종료된 출소자 등의 비율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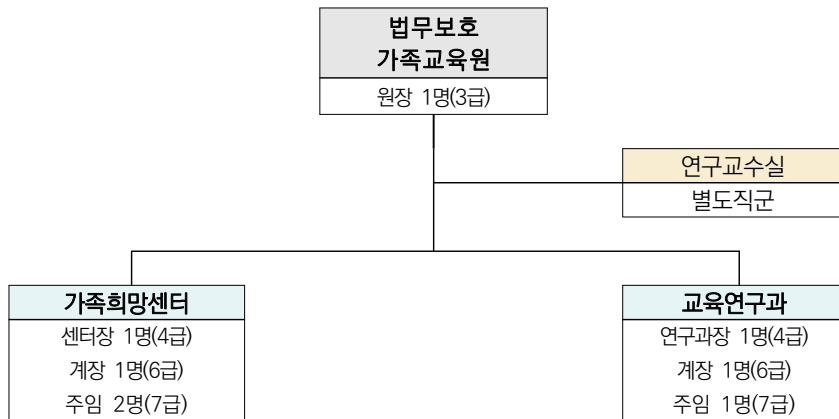
19) 공정식, 공단 합동결혼지원대상자 가족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8

2)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

(1) 조직 및 인력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의 조직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희망센터 외에 갱생보호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연구 및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연구과가 있으며 별도직군으로 연구교수실이 있다.

[표-5] 법무보호가족교육원 조직도표



※ 별도직군은 임금피크제 3년차 대상으로 연구직무를 보직받은 직원임.

[표-6] 법무보호가족교육원 하위부서업무분장

교육연구과	가족희망센터
1. 법무보호복지사업 제도 연구 2. 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3. 정책연구 업무 추진 및 진행 4. 직원·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5. 조직 미래 발전방안 연구(혁신담당관 연계) 6. 교육원 서무·회계 7. 교육원 시설·장비 관리	1. 보호대상자 가족 심리상담 2. 가족, 부부, 청소년 캠프 운영 3.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보호대상자 자녀 학업지원 5. 보호대상자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6. 심리상담직 직무교육 7. 가족희망사업 프로그램 개발 8. 법무보호학회 지원

직원은 총 8명이 있으며,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희망센터는 팀장 1인 외에 2명의 직원이 있다. 가족희망센터의 직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행동치료

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심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2) 예산 현황

아래의 표에는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의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제시하였다. 월의 총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16억 5천여 만원이며 순수 가족사업 이외에 연구비, 직원전문화 교육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7] 가족희망센터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계	1,656,689	355,540	331,375	331,304	333,500	304,970
가족복원비	1,339,700	268,000	268,000	267,700	268,000	268,000
가족사업비	316,989	87,540	63,375	63,604	65,500	36,970

※ 가족희망센터는 `14년부터 예산 배정 및 업무 개시

※ 가족복원비는 연구, 체험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가족체험 프로그램 예산이고, 가족사업비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직원전문화 교육 등의 예산임.

3) 주요 사업 내용²⁰⁾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의 주요 사업은 가족희망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가족사업 이외에 지역친화사업, 교육연구사업 등이 있다. 지역친화사업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봉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연구사업은 보호사업에 필요한 교육 진행 및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지침 제 2 조)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지역친화사업과 교육연구사업은 가족지원사업으로 볼 수 없어 아래에서는 가족사업을 위주로 서술하기로 한다.

20) 주요사업의 각 프로그램 정의와 부수적인 설명은 공단의 지침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서술함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가족사업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족심리검사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가족희망사업 중 상담 및 프로그램 등과 동시 진행 가능
		가족심화 상담	1가구 이내 대상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문제를 면담, 지필 및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상담으로 1인의 성인 및 아동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과 2인 이상의 부부상담, 가족상담으로 구성
		가족집단 상담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가족 간 심리적 문제를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족친화 프로그램 :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가족교육	가족과 관련된 이론적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합숙형태의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 및 레저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타가족지원 프로그램	건강한 가정생활유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가족에게 자녀학업을 위한 물품 및 장학금·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심리상담에 참여한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지역 친화사업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프로그램 진행		
교육사업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내부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직원 및 지역 자원봉사자 대상, 보호 사업 및 상담 관련 교육		

(1)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① 가족심리검사

가족심리검사는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검사로 심층종합 심리검사, 성격검사, 진로 및 적성검사, 대인관계검사, 학습능력검사가 실시된다. 가족 심리검사는 보호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 전문평가자와 1:1로 진행되거나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심층종합심리검사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지적/정서/성격적 측면을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성격검사는 대상들의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고, 진로 및 적성검사는 학업 및 직업적 선호도를 탐색하게 된다. 대인관계 검사는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고, 학습능력검사는 학습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학업 기술 습득 정도와 자원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가족심화상담

가족심화상담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상담(위기가족상담, 이혼상담), 가족갈등이나 사회부적응 문제, 정서문제, 비행, 성격 진로 등과 관련한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심화상담을 통해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③ 가족집단상담

가족집단상담은 가족갈등이나 소원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또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개선 및 효과적인 갈등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집단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가족 간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은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관계증진을 바라는 가족을 대상으로 역기능적인 관계패턴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촉진적으로 진행하는 기법을 습득케 도운다. 부모-자녀 상담은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이 있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상담을 위주로 운영된다.

④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의 2018년 실시 현황

[표 8] 2018년 가족심리상담프로그램 실시건수

구분	합계	심리검사	심리상담	집단상담
인원	241	155	54	32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의 가족희망센터에서 2018년 진행한 가족심리상담프로그램의 총 241 건이다. 그 중 심리검사가 155건, 심리상담은 54건이며 집단상담이 32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대면상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상담내용은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자녀문제, 성격 등 가족구성원의 문제와 역동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심리검사는 MBTI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PAT), KPHI-RC, CBCL검사 등이 이루어졌다. 상담의 주체는 심리상담전문가인 센터직원이 대부분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일부 외부 전문상담가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가족희망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 건강지원센터에서 2015년 개발하여 운영한 가족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은 4회기로 이루어졌으며 해결

중심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가족 의사소통증진, 가족역할 인식하고 역할행동 해 보기, 가족규칙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바, 프로그램 전후비교를 통해 의사소통과 가족역할 두 하위요인에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¹⁾.

(2) 가족친화프로그램

① 가족교육

가족교육은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대상자의 대상자 가족의 건강한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한다. 가족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에는 의사소통교육, 감정코칭교육, 대인관계능력 증진 교육, 부모교육, 부모역할훈련 등이 있다.

② 가족캠프

가족캠프는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형식의 합숙위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부부 및 가족이 참여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정서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기대와 관계방식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생산적으로 가족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게 유도한다. 가족캠프 프로그램에는 가족캠프, 자녀사랑캠프, 청소년캠프, 부부캠프 등이 있다.

③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레저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유익한 사회적 학습 체험을 함과 아울러,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족기능을 증진케 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이에는 가족 영화제, 숲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④ 가족친화 프로그램 2018년도 실시 현황

21) 한영옥 외, 출소자가정복원을 위한 가족개입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법무보호연구, 2015

[표 9] 가족친화프로그램 실시건수

구분	합계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가구수	132	61	56	15
인원	245	113	85	47

2018년도에 실시된 가족친화프로그램은 총 132가구 245명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가족캠프 113명, 가족교육 85명, 문화체험 47명에 대해 실시되었다.

2017년 실시된 가족교육에 대한 내부 결과보고자료²²⁾에 의하면 각기 22명 11명, 25명의 가족에 대해 실시된 가족교육은 MBTI 성격유형검사, 부부관계 리모델링 프로그램 등 의사소통향상과 관계증진을 도모하는 8시간 가량의 단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자체적인 평가결과에 따르면, 문제해결능력, 변화동기, 친밀감, 소통방식, 긍정적 미래관 등을 측정하는 5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지를 통한 사전, 사후질문지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캠프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 2차에 걸친 가족캠프와 1차의 부부캠프가 진행되었다. 5월 1박 2일 동안 4가정의 12명에 대해 법무보호가족교육원 및 인근 수목원 등에서 실시된 1차 캠프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가족소통증진, 가족화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신뢰회복 및 관계재설정을 도모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응집력 상승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10월 실시된 2차 가족캠프와 11월 실시된 부부캠프에서는 가족응집성 평가결과가 사전검사에 비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프로그램 자체평가에서 뚜렷한 긍정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하였다.²³⁾

위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가족단위의 접근에서 의미가 있고 선호되는 프로그램들이 예비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2017년 제 1차 ~ 제 3차 가족교육 결과 보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23) 2018년 제 1차 ~ 제 2차 가족교육 결과 및 부부캠프 결과 보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8

(3) 기타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타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미취학 및 검정고시 등 자녀학업지원이 주 내용이며 만 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보호대상자 자녀가 그 대상이 된다. 이에선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뉘며, 교재, 교복, 학용품 등의 구입 지원 및 교통비 지원이 직접지원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자, 대학생 서포터즈 등 멘토링을 활용한 개인학습지도 또는 체육활동 코칭, 학업부진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치료 등이 간접지원에 해당한다.

[표 10] 2018년 가족희망센터 진행 자녀학업지원 프로그램 실적

합계	학습지도	교재	학용품	교복	학비등
1,059	218	127	612	82	20

자녀학업지원사업은 가족희망센터만의 실적은 미미한 편이며 일선기관에서 그나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라 아래에는 가족희망센터 이외, 일선 기관의 자녀학업 지원 실적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11] 자녀학업지원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합계	2018	2017	2016	2015
개시인원		3,416	1,280	1,163	973	1,059
지원 건수	직접	3,938	1,384	1,270	1,284	1,151
	간접	7,355	2,505	2,312	2,538	3,429
	계	11,293	3,889	3,582	3,822	4,580
집행금액		509,973	173,978	163,398	172,597	186,111

※ 자녀학업지원사업은 `15년부터 예산 배정 및 사업 시행

※ 직접지원건수 : 교재, 학용품, 학비, 교복, 장학금 등 출소자 자녀들이 지원받은 건수

※ 간접지원건수 :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해 학습지도를 받은 건수

4) 가족희망사업의 대상 및 진행절차²⁴⁾

(1) 가족희망사업의 대상 및 신청

① 수혜 대상자

가족사업은 대상자 및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친화사업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자 가족지원사업은 교정기관 수용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청

가족사업은 센터 내방이나 서면, 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센터는 프로그램 신청서를 비치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할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타 지부에서 이관된 사전상담조사서는 사전상담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전산 및 행정처리를 한 후 대상자가 교육원에 내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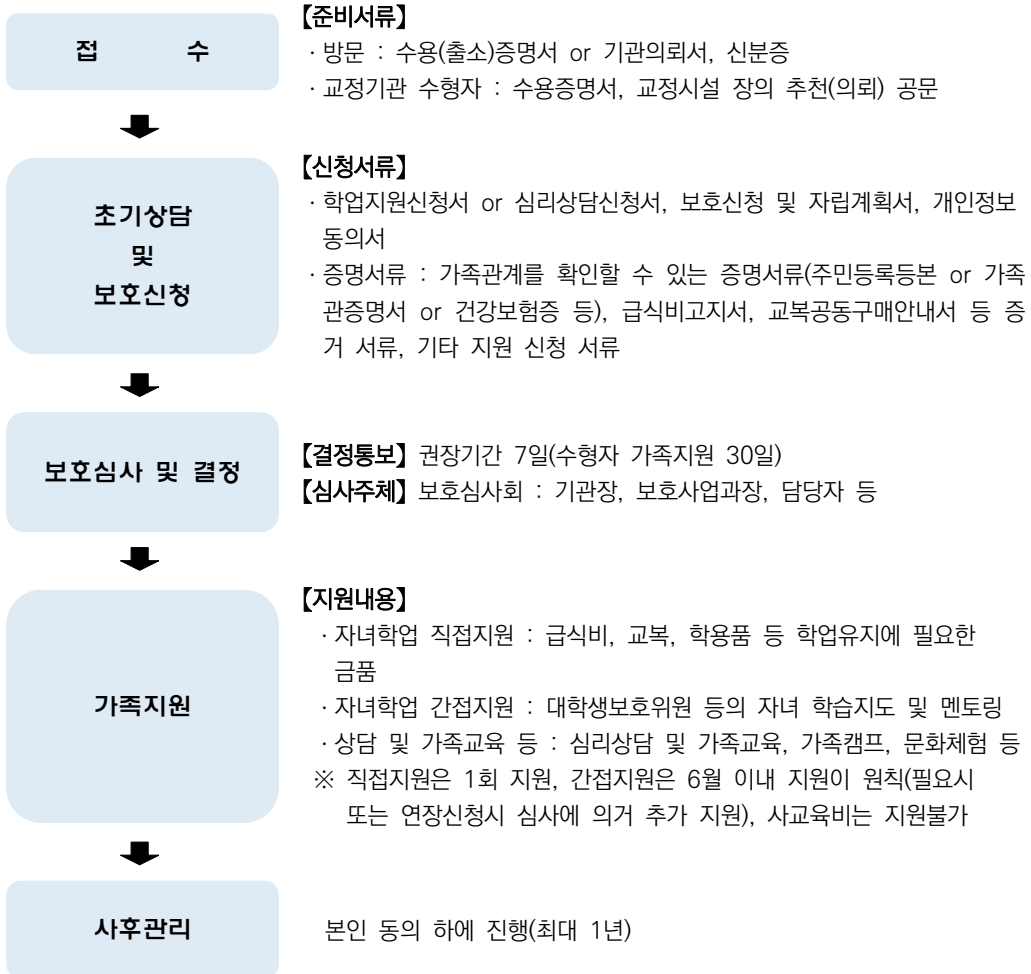
(2) 가족희망사업의 개시 및 진행

① 개시 준비 절차

가족지원사업 개시 전 초기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원장은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이 이루어지면 보호심사회를 통해 대상자의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타 지부에서 보호사업이 개시된 자가 교육원에 위탁된 경우 초기상담 및 보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개시가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담당자는 보호카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개시준비절차가 완료된다. 카드에는 보호대상자 증빙서류(출소증명서 사본 등),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프로그램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첨부하여 비치한다. 대상자의 가족은 별도의 카드를 생성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의 카드에 추가가입 후 전산에 접수등록하면 된다.

24) 법무보호가족교육원 운영지침(2017. 4. 28. 제정, 2018. 10. 18. 개정) - 이는 가족희망사업이 개시된 2014년 제정된 가족희망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법무보호가족교육원으로 조직 변경 후 폐지되면서 새로 수립된 지침임

[표-12] 가족희망사업 서비스제공 흐름도



② 사업 진행 절차

상담자는 개시가 결정된 대상자와 상담일정을 조율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담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인 및 집단상담은 상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 간 간격은 가급적 1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개인사유로 인해 상담의 개시가 연기될 경우 다시 일정을 잡되, 최대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가족심화상담의 경우 특별한 종결 사유가 없는 한 상담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 밖의 상담의 경우 1년으로 기간을 제한하되 상담자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험사례에 해당하지

나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가족희망사업 참여 대상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차원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업 종결

가족희망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해진 회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둘째 상담자가 대상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셋째 대상자를 전문치료기관에 이관한 경우, 넷째 상담을 시작한 대상자가 3회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다섯째 대상자가 사업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여섯째 그 밖에 상담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④ 사업 기록 및 관리

상담자는 심리검사 결과, 상담 및 프로그램, 교육내용, 조치사항을 포함한 상담내용을 법무보호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또한 가족희망사업 월별 진행현황 결과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교육원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원장은 가족희망사업 진행결과를 사업에 참여한 공단기관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IV. 가족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에 연속되는 일관된 가족지원제도의 필요

영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정책수립에 있어 출소 전의 수용자와 출소후의 출소자에 대해 분리된 접근을 취하기보다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처우가 연속되도록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연방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의 TPCI모델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통합적 관리체계 모델로 교도소 입소부터 석방 이후 사회자원 연계 및 사회적응까지 관련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졌다.²⁵⁾

25) 유병철,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1):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가족지원관련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정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사랑 캠프 등이 있고, 이외에 2013년부터 의정부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단위의 구금시설과 인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수용자를 위한 가족상담, 교육,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연계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사업수행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이런 사업들이 엄밀한 관점에서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범죄유발욕구의 사정(assessment)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출소 후와 연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에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가족지원사업이 제공되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계획 및 개별적 처우가 기해져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런 사례관리자가 시설내에 소속되어 사회내 기반의 사례관리자와 협업하기도 하고 사회내 기반의 동일한 사례관리자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²⁶⁾.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가 대상자의 위험과 욕구의 사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사례계획수립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표적지향적인 서비스가 기해진다는 사실이다.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수형자가족지원사업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속적 서비스제공의 차원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희망하는 수형자의 가족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심리상담, 원호지원, 자녀학업지원, 주거지원 등 사회에 남겨진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컨대 LH공사의 임대주택 10호가 가족에게 제공되거나 심사 중에 있는 실정이다. 수용단계에서부터 가족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자는 출소 이후까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출소 이후 상황변화에 맞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사업의 경우도 극히 미미한 비율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불과하다. 가족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수형자·출소자지원사업 전반에 있어 성공적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교정기관과 공단의 정보공유의 강화, 전폭적인 협업을 위한 이해의 공유와 더불어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차원에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6) Shelli B. Rossman, Janeen Buck Willison 외, Second Chance Act Adult Offender Reentry Demonstration Projects, Evidence-Based Practices: Case Management,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p24~, 2016

서의 출소자지원 통합사업에 대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증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실시 노력 필요

공단에서 실시하는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이 주거지원이나 가족심리상담 등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중요한 요인에 대한 대처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개별 출소자에 고유한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를 충족시켜주고 출소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보호요인들(protective factors)을 미리 사정(assessment)하고 개별화된 사례계획(case management)에 따라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 교정현장에서는 최근 수 십년 동안 범죄자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교정개입프로그램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증거 기반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s)의 핵심적 원칙은 1)실질적인 위험과 욕구(needs)를 사정하고, 2)본질적인 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하며, 3)개입시 위험원칙(risk principle), 욕구원칙(need principle), 반응성원칙(responsivity principle)을 적용하고, 4)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method) 등의 방법론을 활용함과 더불어, 5)긍정적인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증가시키고 6)실제 지역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지원에 참여케 하고 7)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²⁷⁾.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족상담, 가족친화프로그램 등이 개별 출소자의 실제적인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가? 수혜를 받는 과정이 출소자의 책임성(responsibility)을 고양시키고 인지과정의 변화 및 새로운 동기를 유도하고 있는가?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방식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점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지원사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출소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나아가 수형자와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도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출소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개입과 프로그램들이 대상 범죄자에 대해 어떤 효과를 거두며 시도하는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교정은 물

27) Crime and Justice Institute at Community Resources for Justice. Implementing Evidence-Based Policy and Practices in Community Corrections. National Institution of Corrections, 2009

론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 교정, 나아가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복귀촉진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범죄방지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무행정 전반의 실천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3) 사업전담인력 및 예산의 부족

현재 출소자에 대한 가족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실무 인력은 법무보호가족교육원 가족희망센터의 심리상담전문요원 3인이 전부라고 보인다. 전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볼 경우,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가족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심리상담직도 기관별로 1인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기반의 적절한 문제해결지향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보인다. 공단 상담전문인력의 업무가 사전상담, 취업지원 상담, 숙식대상자 상담 등 비체계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현실적 필요에 따라 잡다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심층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미비된 상황이다.

가족지원사업예산을 보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법무보호가족교육원 전체 예산이 3억 5천이며 이 중 가족희망사업에 활용되는 예산은 2억 여원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2018년 기준으로 73억원인데 비하면 제대로 된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 상황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예방사업에 관한 최근의 미국 정책당국의 눈여겨 볼 만한 노력은 ‘정책미집행으로 인한 고비용지출(costs of inaction)’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제고와 이에 바탕한 ‘선순환적 예방투자(front-end investment)’의 경향이다. 범죄자 재범방지정책에 있어서도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는 전략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임은 물론 생산적인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4) 지역사회의 참여 부족 극복과 민간의 관심 및 협력 활성화

가족의 문제에는 가족구성원의 역동, 잘못된 가족규칙, 비생산적인 의사소통 등 가족심리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적 빈곤 및 취업문제, 지역공동체와의 결속 부족과 적절한 자원활용 미흡 등 여러 해결과제들이 복합적으로 노정되어 있을 수 있다. 이의 해결은 공단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며,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유관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 및 참여유도를 통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공단 및 법

무보호가족교육원은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보호위원조직의 직능별 분과로 가정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일부 활용하여 자녀학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지역유관단체 협력네트워크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미국은 가족지원프로그램실시에서 다양한 민간의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종교기반(faith-based)의 단체가 적극 출소자의 가족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각종 기금과 교부금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장려하며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가족지원사업에의 지역사회자원동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와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부정적 인식과 선입관이라고 볼 수 있다. 공단시설 등의 이전계획이 입주예정지 인근주민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예도 최근 발생하였다. 이런 실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주민에 대해 출소자 사회복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출소자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재범감소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강화를 도모케하고 범죄의 사회적비용절감을 통해 국가예산절감은 물론, 범죄자의 지역사회재통합을 도모해 보다 건강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점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국민홍보노력과 더불어 주요정책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 사업 실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시적, 분절적 프로그램에서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가족희망센터가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인 가족상담프로그램이나 가족친화프로그램 전반의 구성과 집행상황을 보면, 일회 또는 단기적인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명확한 출소자의 욕구를 표적으로 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개입전략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출소자지원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보인다.

애초 가족희망센터가 출범할 당시 사업운영계획에는 가정문제에 대해 단회적이거나 분절적이 아닌 종합적인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합적인 요구해결이 아닌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 가족역동, 즉 잘못된 의사소통방식, 가족규칙의 개선, 가족갈등의 해결, 가족응집성 강화 등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장기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기해져야 한다.

나아가 출소자 가족의 욕구는 복합적이라고 본다면, 심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구체적인 대상자가족의 경제현실적 문제해결과 병행한다면 지원의 효과는 당연히 배가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족상담서비스가 긴급원호, 취업지원 등과 결합되면 보다 확실한 사회복지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2) 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거점 필요

가족희망센터가 위치한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은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실, 가족활동실, 심리검사실 등이 구비되어 있고 또한 같이 숙식할 수도 있는 방도 28 호실이 있는 등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다만,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국 단위의 출소자 가족이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진주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출소자 부부와 자녀가 본인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도 가족교육원이 있는 오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선뜻 참여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출소자지원사업의 일선수행주체인 공단지부차원에서 보더라도 생활관 시설 위주로 구성된 지부에서 지역단위로 가족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담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은 물론이고, 적절한 프로그램공간이 부족하며, 공단생활관이 각각의 지역사회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힘든 장소에 위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별로 가족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접근성이 높은 곳에 외부상담센터를 구성하는 방법²⁸⁾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28) 이동훈 외, 공단심리상담 및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p 237, 2017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편

김 봉 수*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수 교수입니다. 서기관님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처음 뵈고 올해로 정말 10년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관님을 롤모델로 저는 인턴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언젠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뵈기를 꿈꿨었는데 정말 인연이란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님,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위원장님, (사)아시아교정포럼 이백철 이사장님 이하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실무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대 주제인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학계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출소자의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발표를 해주신 김기환 서기관님께 다시한번 존경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특히 발표문을 보면서 가족희망사업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접하였고, 항상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는지에 다시 한번 새삼 놀랐습니다.

서기관님의 연구내용과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에 하나인 가족희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그대로 해결되고 진행만 된다면 다시는 재범을 꿈꾸지 않을 더 없이 좋은 연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발표문 속에서 몇 가지만 저와 다른 의견이 있어 서기관님의 고견을 듣고 제가 앞으로 연구하려는 분야의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은 연구자료가 될 듯 하여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사법 박사

첫째로 발표문에서 미국의 출소자 지원사업중 하나인 범죄자 리엔트리를 소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의 구금시기부터 출소 이후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시설내와 사회내의 교정정책 사업에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 정서와 여론에 있어 미국과 한국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여론에서는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벗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가족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또한 여론의 움직임은 만만치 않을듯합니다.

반면 미국은 범죄자 리엔트리에 85조 달러 이상, 최근 900개의 리엔트리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의 지원으로 건강, 주거지원, 취업, 가족지원, 교육 등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꺼고 2018년 기준 가족희망사업에 활용되는 예산은 2억여원으로 예산의 부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확보만 해결이 되면 사업전담인력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범죄자에 대한 편견과 예산확보부분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서기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과 예산확보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스템은 과거에는 응보형 사법형태에서 회복적 사법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수형자들을 수감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방법인데, 그렇기 위해서 현재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들 중 모범수를 선별하여 소망의 집, 중간처우의 집에서 사회적응을 하고 있고, 발표문 20페이지에서 가족만남의 날, 가족사랑 캠프 등 가족지원관련 사업, 2013년부터 의정부교도소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연계사업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전국 53개 교도소 중 아직 소망의 집은 5개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7페이지에 지역사회 복귀하는 80% 이상이 사회복귀센터나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를 말씀하셨는데 제 사견으로는 현재 정책적, 제도적,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처우의 집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가족희망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문제점이 충분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꺼 같고, 제가 궁금한 점은 가족희망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범죄자 대상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미국에는 리엔트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고 정착되는데는 지역사회자원동원이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부족 극복과 민간의 관심 및 협력의 활성화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시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연구를 하다보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지역사회교정은 해결되지 않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의 계시면서 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지요?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의미와 과제

정 봉 영*

①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의의

- 대상자의 수감생활 또는 출소 후 사회정착하기까지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에 노출되는 출소자 또는 수형자의 가족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②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본질적 효과

-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은 법무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을 통하여 대상자 및 가족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도와 궁극적 자립을 지향
 -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 **범죄의 대물림 예방** (수형자들의 13.2%는 가족 중에 교도소 입소 경험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 부모가 수감 중인 자녀들의 비행률 10%)¹⁾
 - 범죄로 인해 해체된 가정에 대해 주거지원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한 Full House 가족공동체 재구성
 - 처벌과 제재가 아닌 복지적 Care를 통한 강력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국가가 만든 어떠한 재범방지의 울타리도 가족의 울타리만큼 튼튼하지는 못함)
 - 대상자의 재범예방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
 - 지역사회 안전 도모

③ 향후과제

-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출소자에 대한 반감이 가족에게 전이, 출소자와 출소자 가족을 동일시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2차 피해(신상정보유출, 비난, 차별 등) 방지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소장

1) 신연희,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출소준비 수형자 및 출소자 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제51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15, p.219

○ 법무부, 교정기관, 공단 간의 협의체 구축

- 교정기관 내에서 상시적으로 상담과 신청,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가족지원사업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 가족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수형자(출소1년을 앞둔)에 대한 가족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주로 출소자 또는 사회 내 처우자에 집중되어 있음. **가족지원사업의 대상을 출소자 뿐만 아니라 출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든 수형자 가족에게 확대 필요.** 가족들의 위기는 대상자가 수감, 형이 확정되는 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족지원사업 신청을 출소 1년 전으로 제한하게 되면 이미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자녀들의 심리적·학업적 문제가 발생, 만성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수감되는 시점 또는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초기에 가족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 가족지원사업의 세분화

- 주거지원, 원호지원, 학업지원, 심리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세분화하고 확대할 필요.

※ 2019년 서울서부지소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심리상담, 학업지원) 사례 /

조OO(여)는 전업주부였으나 갑작스런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OO마트에서 단순판매직으로 일하며 두 딸(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양육하고 있음. 이와 같이 출소자 또는 수형자 가족들은 갑작스런 가족의 부재(수감)로 인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우, 경력과 자격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되어 가족을 돌볼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이러한 가족 내 위기는 『수감->가족 해체->자녀비행->수감』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 가족지원사업으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가족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필요.

○ 법률·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과 예산 확충

부 록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 규정

2009. 12. 20 제정

2013. 09. 01 일부개정

2015. 01. 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 26조에 규정된 '학술지 및 소식지'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전임강사 이상인 자나 전문대학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 연구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지에 연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업무)

- ①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연구지(교정담론)의 편집
 2. '교정담론'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결정

3. '교정답론' 게재신청 논문 심사를 위한 외부심사위원 추천
 4. 기타 간행물의 편집
- ② 연구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교정답론'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나눈다.

제7조(개정)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교정담론」 논문심사 규정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논문 심사에 있어 다음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정담론」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3월 15일, 2호의 경우 7월 15일, 3호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아시아 교정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4.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편 당 3명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척관계, 출신학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5. 논문심사는 1호의 경우 3월 30일, 2호의 경우 7월 30일, 3호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6.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표 1>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의 네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 2>의 판정표와 같다.
8. 판정기준에 따라 '수정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수정된 내역(<별표 3>)과 함께 1호의 경우 4월 10일, 2호의 경우 8월 10일, 3호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재 제출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9. 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0. 재심사는 1호의 경우 4월 20일, 2호의 경우 8월 20일, 3호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완료한다.
11. 재심사 결과 판정은 1차와 마찬가지로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별표 1: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교정담론 제 권 호(20 년 월 일 발행예정)
3. 초·재심구분: 초심() / 재심()
4. 세부심사결과

구분 \ 등급	매우 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 미흡 (0-4)
연구목적의 적절성					
논리의 체계성/명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이론적, 정책적 기여도					
투고요령의 준수성					
총점	/100				

종합판정

판정 결과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재심사	()
	게재 불가	()
수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 -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 - 제시된 근거를 최신의 자료와 법령 등에 따라 보완할 것 () - 원고작성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할 것 () - 기타 () 	
게재불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발표된 내용의 논문임 () -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 - 본 학회보의 성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논문임 () - 기타 () 	

심사위원 소속, 직위 및 성명: _____ ①

교정담론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 제목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별표 2: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
게재	게재	게재	그대로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게재부적합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부적합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부적합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게재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수정게재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별표 3: 논문수정 내역표

논문 수정 내역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교정담론』 제 권 호 (20 년 월 일 발행예정)
3. 초·재심구분: 초심() / 재심()

논문 수정 내역

심사 위원	심사위원 의견	수정내용 및 저자의견
1		
2		
3		

년 월 일

저자 명 :

아시아교정포럼 귀하

『교정담론』 투고 규정

1. 『교정담론』은 범죄, 교정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재하기 위한 논문집(저널)으로서 사회 과학분야와 인문학분야 전문가의 교정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 『교정담론』은 동종분야의 이론, 조사연구, 역사적 쟁점, 정책제안 및 평가 및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투고를 권장한다.
3. 『교정담론』에 발표하는 논문은 창의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집(저널)에 동시에 심사요청해서도 아니 된다.
4. 『교정담론』은 1년에 년 3회 발행하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행한다.
5. 투고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투고자는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 이전에 논문을 접수 시켜야 한다.
6.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아시아교정포럼 인터넷 홈페이지(<http://correction-forum.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논문투고를 해야 한다.
7.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표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논문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8.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
『교정담론』에는 논문 이외에 범죄 및 교정 영역의 국내·외 논문에 대한 논평, 동 영역의 저서 및 번역서에 대한 서평, 그리고 동 영역의 현장체험 및 기행 등을 담은 특별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문을 신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게재와 동일한 요령으로 온라인 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송고한다.
9.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전자우편: affc@naver.com
 - 주소: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 A동 307호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
Tel: 031) 249-9340 Fax: 031) 249-9314
10. 투고된 논문의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교정담론』논문 집필 규정

1. 『교정담론』에 제출하는 원고의 분량은 국문요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20매 이상이어야 하며 25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의 분량은 따로 정하지 아니 한다.
2. 원고 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 편집용지: A4(210×297mm 기준)
 - 글자모양: 바탕체 10, 장평 95, 자간 -5,
 - 줄 간격: 160%
 - 여백주기: 위쪽 60mm, 아래쪽 60mm, 왼쪽 50mm, 오른쪽 50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3. 원고의 작성은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넣어서 작성한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쓰고 그 뒤로는 쓰지 아니 한다.
4. 각 원고는 심사용 논문과 원본 논문 두 개의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용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원본 논문에는 표지를 작성한다.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와 공동필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이메일, 전화)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5. 요약문은 2000자(A4 1매)분량으로 한국어와 외국어(제목과 저자명 명기)로 각각 작성한다. 또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표기한다.
6. 본문 서술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제목의 순서와 글자
 - 장·절·항·목의 번호는 “1”, “1”, “1)”, “(1)”, “①”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 로마숫자 (글자크기: 13, 진하게, 정렬방식: 가운데)
 -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1.5, 들여쓰기 3칸)
 -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1, 진하게, 들여쓰기 3칸)
 -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3칸)
 - ①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3칸)
 - 2) 본문에서 인용과 출처 표기
 - ① 인용과 출처의 표기는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할 때에는 인용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 ▶예: 이백철(2005: 25), 또는 (이백철, 2005: 25)
- ③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예: 허쉬(Hirschi, 1969)
- ④ 저자가 2인일 경우엔 항상 두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
▶예: 윤옥경·이백철(2005), (Walker and Allen, 2004).
3인 이상일 경우엔 제1 저자명 외의 표현을 사용한다.
▶예: (이백철 외, 2005), (Bradley et al., 1999).
- ⑤ 번역서에 대한 인용출처 기재는 원저자, 원서 출판연도/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Hirschi, 1990/1995: 10).

3) 각주

각주는 본문의 실질적인 정보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사용한다. 각주는 바탕체 9, 줄간격 130%로 한다.

7.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것만을 제시한다. 언어상으로는 한국어, 동양어, 서양어의 순으로 제시하고 각 언어별로 저자명을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제시한다.
- 1) 국문 저서나 논문집의 이름은 『 』기호 안에 넣어 표시하고, 논문제목은 “ ”기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 2)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출판사항, 출판연도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 저서
홍길동, 『교정학개론』, 한국출판사, 2008.
Currie, Elliott, *Punishment in America*, NY: Henry Holt and Company, Inc., 1998.
- ② 논문
홍길동, “미국교정의 위기”, 『교정담론』, 제7권 1호, pp. 10-30, 2013.
Farrington, David and Langan, Patrick A., "Changes in Crime and Punishment in English and America in the 1980s", *Justice Quarterly*, Vol. 9, No. 1, pp. 5-18, 1992.
- ③ 학위논문
허주욱, 『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Yoon, Okkyung, *The Economy, Political Repression and Crime Control in Korea*,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8.
- ④ 저서의 일부 또는 편집한 저서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참조한 경우
윤옥경·윤종우,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예비적 연구”, 청호 남상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범죄와 사회』, pp. 449-488, 법문사, 2006.
Farrington, D. P.,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7, pp. 381-45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⑤ 번역서

Hirschi, Travis,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1990 (문근영 역,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1995.)

⑥ 인터넷 사이트 및 문서

<http://www.icpsr.com> , 2007. 10. 20.

8. 표와 그림 및 사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제목은 “〈표 1〉 수도권 범죄율 변화, 1960 ~ 2000...”와 같은 형식으로 표와 그림 위에 가운데 정렬방식으로 적는다.
- 2) 표나 그림 및 사진에 대한 설명 주는 “주: OOO”와 같이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OOO”과 같이 표와 그림 아래에 표기한다.
- 3) 그림이나 사진은 컬러(colour)를 넣어도 무방하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 표시됨을 유의한다.
- 4) 통계적 유의도의 표시는 유의수준에 따라 세 종류로 다음과 같이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로 표기한다.

9. 이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과학 학술지의 관례를 따른다.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편집위원회

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

2008년 6월 1일 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09년 12월 20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윤리규정은 회원, 기관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

- ① “연구활동”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 ② “심사활동”은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 ③ “연구자”는 학회와 관련하여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 ④ “저자”는 연구자로서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저술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 될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날조”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3. “변조”는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4. “표절”은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타인의 생각 또는 연구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저자의 부당 표시”는 공동 연구물인 경우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배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 ⑥ “비윤리적연구행위”는 동 윤리규정 제 3 조의 ⑤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

지 않으나,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확보와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제4조(정직성)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 ①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7조(공동연구)

- ①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 간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저자의 책임)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 ②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제9조(저자의 결정)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구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註)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연구행위**제11조(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날조, 위조,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 ④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저자의 부당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심사**제13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취급에 있어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심사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15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활동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활동에 있어 비윤리적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6조(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규정시행

제17조(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학회지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교정답론에 논문게재 신청을 할 때에는 논문투고 신청서에 포함된 윤리규정 서약을 읽고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 목적 및 성격)

- ①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보고가 있을 때 구성되며, 본 학회 정관 제17조의 4에서 정하는 한시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 학회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가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강령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4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1회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본조사 과정 중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1회 3개월 내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조치에 입각하여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자에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야 한다.

제28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 될 경우, 기존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교정담론』 논문 게재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논문 제목	
-------	--

■ 저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소속 및 직급/직위	(소속 및 학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택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 공동저자 인적사항(해당사항 있을 경우)

성명	(한글)	(영문)
소속 및 직급/직위	(소속 및 학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택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위 연구물에 대해 교정담론에 게재를 신청하며, 게재된 이후 위 연구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아시아교정포럼에 위임**합니다. 또한 저자(들)는 아시아교정포럼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인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저자 : (인)

아시아교정포럼 귀하

회원가입안내

1.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주소로 개인인적 사항(이름, 소속, 전화번호, 우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교정포럼: e-mail: affc@naver.com

homepage: <http://correctionforum.or.kr>

2. 연회비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10만원

일반이사: 5만원

정회원/준회원: 3만원

단체 및 법인회원: 20만원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9-327076 (예금주: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사단 아시아 교정 포럼
법인 Asian Forum for Corrections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 A동 307호

전 화 : 031-249-9340

팩 스 : 031-249-9314

이 메 일 : affc@naver.com

홈페이지 : <http://correctionforum.or.kr>